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6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6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회의보고	2
✓활동보고	8
✓활동자료	32
✓정책자료	112
✓선전자료	186

**Ⅰ 연금행동 2016년
1차 집행위원회 회의**

2월 2일(화) 오후 2시
잠실 사무소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신석호 정책국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최원진 활동가),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공무원노조(박중배 사무처장), 노동자연대(신정환 활동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철도노조(김용식 국장), 사무국장 등 11개 단체, 14명 참석

[논의]

1. 2015년 활동보고 및 결산보고
2.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 기타

**Ⅰ 연금행동 2016년
대표자 회의**

2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한국노총(최두환 상임부위원장, 유정엽 정책실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노년유니온(김병국 부위원장, 고현종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조상수 위원장, 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김영균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오유진 사무처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노동자연대(신정환 활동가), 사무국장, 총괄간사 9개 단체 15명 참석

[논의]

1.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 2016년도 총선대응 사업계획 및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 기타

Ⅰ 연금행동 2016년 2차 집행위원회 회의

3월 1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오유진 사무처장),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노동자연대(신정환 활동가), 국민연금지부(김능우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6개 단체, 8명 참석

[논의]

1. 2016년 총선 대응사업
 -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및 총선넷 약속의제 제출 관련 검토
 - 총선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 관련 검토
 - 총선사업 일정
2. 기타

Ⅰ 연금행동 2016년 3차 집행위원회 회의

4월 27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미 활동가),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국민연금지부(변희영 위원장),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성민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 8개 단체 11명 참석

[논의]

1. 2016년도 총선 대응 사업 평가
2. 향후 공적연금강화 사업계획 논의
3. 기타

**Ⅰ 연금행동 2016년
4차 집행위원회 회의**

6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실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김정목 정책간사), 민주노총(홍원표 국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사무국장 등 5개 단체 9명 참석

[논의]

1.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 전 기금운용본부장 고발의 건
2. 20대 국회 입법과제 관련
3. 가칭 ‘국민연금기금 가입자 위원 포럼(네트워크)’ 구성 관련
4. 정책위원장 선임 관련
5. 향후 일정 관련
6. 기타

**Ⅰ 연금행동 2016년
5차 집행위원회 회의**

7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잠실사무소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사무국장 등 6개 단체 8명 참석/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태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부분부장 참관

[논의]

1. 8월 공적연금 대토론회 관한 건
2. 하반기 사업계획에 관한 건
3. 기타

Ⅰ 연금행동 2016년 6차 집행위원회 회의

9월 20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변희영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 미 활동가),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노동자연대(신정환 활동가), 사무국장 등 7개 단체 총 9명 참석

[논의]

1. 공공부문(국민연금지부 등) 파업 지원에 관한 건
2. 기타

Ⅰ 연금행동 2016년 7차 집행위원회 회의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1간담회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성민 정책연구원장), 사무국장 등 8개 단체 10명 참석

[논의]

1.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개선 방안 관련
2. 전미서비스노조(SEIU)-연금행동 간담회 관련
3. 2015년 사업평가 및 2017년 사업계획 논의 관련
4. 기타

Ⅰ 문형표 이사장 사퇴 촉구 및 사퇴 촉구서 전달 기자회견 1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내용]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부위원장, 신석호국장), 공무원노조(이재섭 사무처장, 반명자 성평등위원장), 공공운수노조(최준식부위원장, 박지영국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성민 정책연구원장), 노동자연대(신정환 활동가), 국민연금지부(최강섭 수석부위원장, 이재욱 서울서부지회 본부장), 사무국장 등 
Ⅰ 문형표 이사장 사퇴 촉구 및 사퇴 촉구서 전달 기자회견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내용]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신석호국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Ⅰ 성명발표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월 15일 메르스사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관련 문형표 이사장 사퇴 촉구 성명
Ⅰ 문형표 이사장 해임 및 처벌 촉구 기자회견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사무소 앞	[내용]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주최] 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김경자 부위원장, 신석호 국장), 참여연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잔디간사), 철도노조(김용식, 신동호 국장), 공공운수노조(최준식 부위원장, 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최강섭 수석 부위원장),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무상의료 운동본부 등

	
■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문형표 반대 피켓팅 1월 26일(화) 오전 7시 30분 여의도 컨싱턴 호텔 15층	[내용]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외이사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및 퇴장, 피켓팅 전개   

**Ⅰ 집행위 1차
정책워크숍**

2월 2일(화) 오후 3시
잠실 사무소

[내용]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관련

[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연금행동 정책위원)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신석호 정책국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한국여성단체연합(김손경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최원진 활동가),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공무원노조(박중배 사무처장), 노동자연대(신정환 활동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철도노조(김용식 국장), 사무국장 등



Ⅰ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2월 25일(목) 오후 2시 잠실 사무소	사회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건국대 사회복지학과)-“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토론 정용건 집행위원장/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승일 박사(경제학자)/ 이창곤 기자(한겨레신문)/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Ⅰ 논평발표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3월 10일 국민연금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논의 촉구 관련 논평

Ⅰ 연금행동 20대 총선 기자회견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내용]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이재섭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정진화 정책국장), 국민연금지부(변희영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오유진 사무처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사무국장 등 
Ⅰ 이슈페이퍼 발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3월 21일 국민 노후소득 보장 관련 19대 국회 활동평가 이슈페이퍼 사회공공연구원과 공동 발표

연금행동_정의당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본관 216호	[내용] 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참석] ■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정진화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사무국장 등 ■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좌혜경 정책실장, 한창민 대변인, 김성달 정책연구위원, 김명정 정책연구위원 
보고서 발표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4월 6일 20대 총선, 국민 노후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연금행동 총성대응 TF
논평발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6월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고등법원 판결 관련 논평 발표

**Ⅰ 집행위 2차
정책워크숍**

6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3간담회실

[내용]

- 국민연금기금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발제] 원종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연금행동 정책위원)

[토론]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의결권행사전문위원)

[참석]

-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김정목 정책간사),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정책위원(이은주 박사, 이상용 하나금융투자지부 위원장), 사무국장
- 가입자위원: 기금운용위원(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 실무평가위원(이찬진 변호사),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전창환 한신대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회: 남인순 의원(더민주), 윤소하 의원(정의당), 홍성대 전문위원(더민주) 및 복지위 보좌관



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혐의 고발 기자회견 6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내용]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 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주최] 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부위원장, 홍원표 국장), 참여연대(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남희 팀장), 민변(김남근 변호사), 사무국장 등 
Ⅰ 20대 국회 제도개선 요구 기자회견 6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내용] -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노인빈곤 해소와 노 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주최] 연금행동, 국회의원 인재근·윤소하 [참석]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 장), 한국노총(최두환 상임부위원장, 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노년유니온(고현종 사 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국 민연금지부(변희영 위원장), 사무국장 등

	
Ⅰ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7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기금운용본부 앞	[내용]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라!” [주최] 연금행동,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참석] -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부위원장), 참여연대(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잔디 간사),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모임(강찬호 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종오 사무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사무국장 등 

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1일차: 8월 10일(수) 오후 1시~5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일차: 8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6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일차_1주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정용건 집행위원장 발제 전창환(한신대 교수) 토론 국회의원 권미혁,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내일신문 기자), 최홍석(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1일차_2주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사회 정용건 집행위원장 발제 이찬진(변호사) 토론 국회의원 윤소하, 유철규(성공회대 교수), 김승식(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최홍석(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2일차_3주제]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사회 김연명 중앙대 교수 발제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국회의원 김광수, 이용하(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 김성욱(건양대 교수), 정호원(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2일차_4주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사회 김연명 중앙대 교수 발제 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토론 국회의원 남인순, 남찬섭(동아대 교수), 서한기(연합뉴스 기자), 정호원(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주최] 연금행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위원 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해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	--



Ⅰ 논평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9월 8일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 관련 논평 발표
Ⅱ 국민연금지부 총파업지지 방문 9월 27일 오후 3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노동자연대(신정환 활동가), 사무국장 등 
Ⅲ 성명발표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9월 28일 국민연금 총파업지지 성명 발표

■ 국민연금지부 총파업지지 인증샷데이 10월 4일(화)	
■ 집행위 3차 정책워크숍 11월 2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	[발제] “채권 투자를 통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과 고용창출 방안” - 김연명 교수(중앙대, 연금행동 정책위원)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주은선 정책위원장(주은선), 정책위원(이재훈, 이은주), 한국노총(유정엽 정책실장, 김정목 정책간사),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공공연맹(이인상 위원장, 강갑용 정책실장), 참여연대(김남희 복지조세팀장, 김잔디 간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문유진 운영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배경민 연구원), 사무국장 등

	
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뇌물혐의 추가 고발 기자회견 11월 15일(수) 오후 1시 서울 중앙지검	[내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주최] 연금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참여연대(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사무국장 등 
Ⅰ 성명발표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11월 16일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 국민연금 연루 관련 성명 발표

Ⅰ 이슈페이퍼발표	“칠레 민영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11월 21일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재도입을 요구하는 칠레 국민총파업 관련 연금행동_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공동 발표
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형표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내용]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사무국장 등 

Ⅰ 정책토론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1월 25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집행위원장

발제 | 정창률 교수(단국대, 연금행동 정책위원)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토론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실장), 홍원표(민주노총 정책국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남재우(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희(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주최 |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김삼화·이정미



Ⅰ 국민연금 손배소송 국민청원 모집 기자회견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내용]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주최]

연금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참여연대(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최준식 부위원장, 정진화 국장), 국민연금지부(변희영 위원장), 사무금융서비스노조(김금숙 수석부위원장), 금융노조(김기철 부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배경민 연구원), 사무국장 등



Ⅰ 국민연금 손배소송 국민청원 모집

12월 1일 ~ 12일

[온라인]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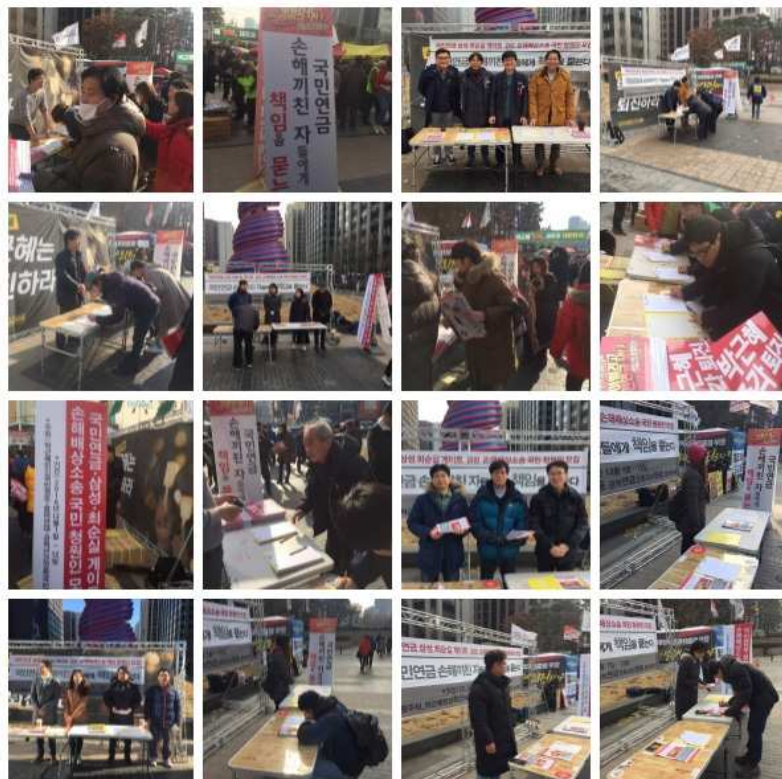
[오프라인]

장소 | 청계광장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참여 |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초원, 배경민 연구원), 참여연대(김남희 팀장, 김잔디 간사),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오유진 사무처장, 서성민 정책연구원장),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정책위원(이재훈, 이은주), 국민연금 수도권지회 본부장 및 사무국장, 오성희 간사 및 사무국장 등

[모집결과]

최종 12,174명(온라인 8,207명/ 오프라인 3,967명)



Ⅰ 국민연금 손배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앞

[내용]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주최]

연금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참석]

정용건 집행위원장, 민주노총(정혜경 부위원장, 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이정식 사무처장, 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성민 정책연구원장), 이상용(하나대투증권노조 위원장, 연금행동 정책위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배경민 연구원), 국민연금지부 수도권 지회 본부장 및 사무국장, 사무국장 등



Ⅰ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집행위원장

발제 |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공적연금 주주권 행사”

토론 |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이찬진(변호사/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김승식(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류영재(서스틴베스트대표이사), 양윤석(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

주최 | 연금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학영



Ⅰ 이슈페이퍼발표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12월 22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개선 방향 관련 연금행동_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공동 발표
Ⅰ 국민연금 의결권 개정 입법발의 관련 연금행동_권미혁의원실 간담회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	[내용]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정 입법발의 [참석] ■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민주노총(홍원표 정책국장), 한국노총(김정목 정책간사), 참여연대(김잔디 간사), 공공운수노조(정진화 국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권능 연구실장, 정초원 연구원), 노년유니온(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전호일 부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성민 정책연구원장), 이재훈 정책위원, 사무국장 ■ 권미혁의원실: 김동영 비서관, 유소영 비서
Ⅰ 성명발표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12월 27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 이사장) 특검 수사 관련 성명 발표

2016.1.7.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 및 사퇴촉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지난달 31일 청와대와 정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참으로 뻔뻔한 오기 인사의 극치다. 당연히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다. 문형표 이사장 취임식은 국민연금공단 노조의 저지를 뚫고 가까스로 진행됐고, 현재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는 국민연금 노조의 문형표 이사장 출근저지 투쟁 및 무기한 천막 농성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비판 성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도 문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 ‘후안무치 인사’, ‘인사 참사’로 비판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금의환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에 가깝다. 문형표는 평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과거 발언들을 보면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후소득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대비할 것을 강조해 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며,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것이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역시 마찬가지다. 장관 시절 문형표는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 그런 생각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1.1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 및 사퇴촉구서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1.15.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촉구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협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1.20.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처벌 및 사퇴 촉구 공동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건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이 보고를 못 받았더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

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재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년 1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2016.3.10.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 논의 촉구 관련 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치우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을 개선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냐는 우려들도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인 전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 등 금융부문 투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정말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지, 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

2016년 3월 1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3.16.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16년 총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에 매진하는 각 정당들은 이기느냐 지느냐, 당선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겠지만, 국민들은 누가 이기든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다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총선 후보 선택기준으로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이 꼽혔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다. 노인소득 불평등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는 전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3~40년 후에도 OECD 평균 지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요컨대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노후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후퇴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 기초연금법 통과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급여를 삭감하고, 현재 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연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짝퉁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야당의 반대는 무기력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적인 책임이 오로지 공무원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낮아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9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한 번 삭감됐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일구어낸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토 전략에 실속 없이 막을 내렸다.

돌아보면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끝나고 나면 철저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했다. 잊혀 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회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인물들이다. 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다. 연금행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과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삭감하는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비정규노동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신설 및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 주고, 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 공공보육, 공공요양 등 사회적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행동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 정부 연금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1. 명단 발표 배경

-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빈곤 상황에 내몰려 있음.
- 노인빈곤이 매우 높은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한 데서 비롯한 결과임.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문제는 최우선 국가 과제라 할 수 있음. 정치권은 과거 총선, 대선 시기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각종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책임지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공적연금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과 관련된 정책은 공약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음.

* 기초연금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시행된 기초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삭감하고, 2) 현재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임.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안 부칙에 명시된 조항보다 후퇴한 내용임.

-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선거 시기에만 표를 구걸하는 데 이용되고 끝나면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행태들은 오히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음.
-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선거 시기에만 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향후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함.

2. 명단 선정기준

- ILO의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No. 202)을 근거로,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전략에 따라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국회의원들을 우선 선정함.
-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고 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동조해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안을 제출하거나 주도적으로 찬성하여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그 대상으로 선정함.

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05~2014.05)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2014.07~2016.01)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4.06)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2013.01~02)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2014.06~)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5.08)
-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2015.08~)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무소속, 2013.04~2014.03)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새정치민주연합, 2014.03~2015.12)
-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014.03~2014.07)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국민의당, 2016.02~)
- 국민의당 공동대표(2016.02~)

○ 선정사유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2012.05~)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5.02~2015.07)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로 후퇴.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015.05~2015.12)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5.12~)

○ 선정사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로 후퇴.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7~)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1~)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딧이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이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이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014.06~)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2015.02~2015.10)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6년 총선]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기업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월 일

당로고

PPA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Public Pension for All

(대표서명)

(대표서명)

2016.3.23. 연금행동-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보도자료

연금행동_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에서 정의당과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을 체결함.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 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3. 이를 위해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을 목표로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강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을 맺음.
4. 협약식 인사말에서 정의당 이정미 부대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일자리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등장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말함. 이번 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한창민 대변인, 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연금행동에서 정용건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함.

5. 이번 정책협약을 계기로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다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 붙임. 연금행동_정의당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서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정의당’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 (4) 중소기업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6. 국민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하는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상의 6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정의당과 국민행동과의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3월 23일



2016.6.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고등법원 판결 관련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지원하면서 일으킨 파장이다. 현재 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과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적용되었으며,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낮게 책정되었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31일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1심을 뒤집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판결문을 통해 당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낸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은 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승계 과정을 노골적으로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 주주로서 오히려 앞장섰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결정됐다는 논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합병에 찬성했다. 또 국민연금은 합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합병 결의일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 매수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여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기금운용본부는 아이에스에스(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합병 찬성을 결정하였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요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매우 비상식적인 측면이 존재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특혜’ 의혹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국민연금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훼손한 행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행각을 통해 최소한 자본시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방기와 주가 조작의 사기와 그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 조장, 그리고 비민주적인 운영까지 점입가경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공적연기금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없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재벌의 일방적인 후진적 경영으로 인하여 훼손된 가입자의 가치를 차치하더라도, 오히려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견제하고 감시

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이 공적연기금으로서의 공익성과는 무관하게,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낙후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를 또 다시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한 철학이나 입장 없이,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상황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데 있다. 앞으로도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 문제가 비단 연금자산 운용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투명성 및 손실보호에도 실제적으로 작용함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이나 해외투기자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삼성가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기금운용본부와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6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6.16.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동 기자회견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6월 16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 참가자
 - 발언1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2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주요 내용

○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 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혐의

-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

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견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견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상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로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인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 비록 이견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견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얹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견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2016.6.30.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

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짜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댔던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

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2016. 6.

PPA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기초 연금		1) 현행 기초연금 독소조항 개선	
		(1)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법 제5조④ 등 개정
		(2)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연동으로 전환	법 제5조② 개정
		2) 기초연금 재정의 전액 국고지원	법 제4조, 제25조 개정
		3) 기초연금 지급수준 및 대상확대	법 제3조①, 제5조 등 개정
국민 연금	제 도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및 상한선 개선	법 제51조 1항 및 부칙 20, 34조 개정
		2)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법 제3조 2에 신설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1) 사회보험 지원 사업 확대	대통령령
		(2)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법 제19조, 18조 등 개정
		(3)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법 제3조 1에 신설
	기 금	1)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및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확대	법 제102조 2항
		2)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사항 명시화 및 행사 내역 공시 등	법 제103조, 105조 등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기금 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 반대	법 제103조

1.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1) 기초연금법 개정

- (1) 현행 기초연금의 독소조항 개선.
-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 폐지 [법 제5조 ④ 등 개정]
 - ② 물가연동(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방식을 소득연동(A값 기준) 방식으로 전환 [법 제5조 ② 개정]
- (2) 기초연금 재정의 전액 국고지원 [법 제4조, 제25조 개정]
- (3) 기초연금 지급수준 및 대상 확대 [법 제3조 ①, 법 제5조 등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노인빈곤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임(OECD평균의 약 4배).
-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라는 것임('06년 46.3%, 7년간 3.3%p 지속 상승)
- 노인 소득불평등도 멕시코, 칠레에 이어 OECD 국가 중 3위(한국 0.42, OECD평균 0.294).
- 노인일수록 훨씬 더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전체인구 빈곤율의 약 3배).

□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요구

- ① 기초연금 급여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 폐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는 삭감되는 방식. → 2016.6월 기준 기초연금은 204,010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돼 20년 이상 가입자의 대부분은 절반만 지급받게 됨.
- ② 물가와 연동해 매년 인상되는 방식 → 소득연동으로 변경.
- 소득(A값)연동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수준은 더욱 낮아지는 형태로 도입. → 물가 연동하는 기초연금의 실질 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국민연금 급여율 5.0%수준으로 절반 낮아지고, 2050년 3.7%, 2060년 3.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됨.
 - 2014년 기초연금 도입이후 물가연동 적용하여 2015년 1.3%, 2016년 0.7% 상승. 이에 비해 소득(A값)연동할 경우 2015년 3.2%, 2016년 2.9% 인상됨. 소득연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현재 어르신들은 8,370원을 덜 받고 있음.

<기초연금 물가-소득 연동방식 비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물가 연동	200,000원	202,600원	204,010원
A값 연동	200,000원	206,400원	212,380원
차액	-	- 3,800원	- 8,370원

- 따라서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A값 기준으로 변경해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야 함.

→ 기초연금의 2가지 독소조항 개선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함.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분담 구조 → 전액 국고지원으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서비스 질 저하.

2) 국민연금법 개정

-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법 제51조 1항 및 부칙 20, 34조 개정] 및 상한선 개선
 - ①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우선 중단(2018년 45% 유지).
 - ②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 ③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의 약 2.5배)로 현실화
- (2)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법 제3조 2에 신설]
-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①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확대 및 내실화 : 지원 대상 기준개선 등(대통령령에서 규정)
 - ②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육아, 군복무, 실업 크레딧 등 확대 [법 제19조, 18조 개정 및 신설]
 - ③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법 제3조 1에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생활도 보장하기 어려운 낮은 국민연금 급여 →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46%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됨.
- 실제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이는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 평균액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가입했을 때 42만 7천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2016년 최저생계비의 생계급여인 47만 1천원(중위소득의 2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국민연금 수급률 및 급여율 전망(단위 : 명, %)

구분	2013	2015	2020	2030	2040	2050
노인 수	6,138	6,624	8,084	12,691	16,501	17,622
노령연금 수급자 수	1,782	2,056	2,764	5,194	8,972	12,310
수급율	29.0	31.0	34.2	40.9	54.4	68.4
평균 소득대체율	19.9	24.2	24.8	23.3	21.8	20.4

* 자료 :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2013). 평균소득대체율은 재정계산 결과(2013)에 따른 국민연금연
구원 추계자료(2013.4).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청와대와 복지부의 반대로 결국 아무런 조치 없이 무산됨.
- 최근 OECD조차 한국의 국민연금은 노인빈곤을 완화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목표소득대체율을 계획된 40%로 낮추지 말고, 현행수준을 유지해야한다고 권고함(OECD 한국경제 보고서 2016).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현실화 (434만원 → 650만원으로 상향).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하한액(22만원)과 상한액(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음. 2010년 7월부터 A값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2016년 현재 434만원)되기 시작했으나, 사업장 가입자 중 약 226만 명(18.4%)가 상한액 이상으로 실제 소득수준과 괴리가 매우 큼(공무원연금의 상한액 805만원, 건강보험은 7,810만 원).
- 국민연금 상한액의 제한은 A값(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생애평균소득)을 실제보다 낮추어 급여수준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상향했을 경우 2%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40년 가입 기준)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국민연금 신뢰회복

- KBS 여론조사결과(2013), 국민연금이 '지급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3.5%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심각한 상황임.
- 이는 그동안 정치권이 '기금고갈'이라는 공포로 불신을 부추기면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인 개악을 추진해 왔기 때문임.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이 국가가 급여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함.

[신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책임진다(신설)

②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광범위한 사각지대 →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등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095만 명이 가입 중. 이 중 실직, 사업중단, 휴직, 재학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약 457만 명, 1년 초과 장기체납자가 약 111만 명으로 약 568만 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못함.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약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 약 40만 명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전환 및 지원이 절실함.
- 또한 현재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추가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산전후 휴가기간 및 무보수 육아휴직기간까지 적용하는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여성수급권을 강화해야 함.
-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추가기간을 인정하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 역시 군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준소득 역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됨에 따라 구직활동기간에 대한 청년 대상 구직 및 직업훈련 크레딧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민주성 강화

- (1)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및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확대 [법 제102조 2항]
- (2)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사항 명시화 및 행사내역 공시 등 [법 제103조, 105조 등]
- (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가입자 대표성 강화 및 별도 공사화 반대 [법 제103조]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 수익률 중심의 기금운용 →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 강화

-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약 524조(2016년 3월 기준)로, 2030년 중반에 GDP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축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신탁자산적 성격 이외 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에 대한 성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요소를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내용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요양, 보육, 의료 및 주거 등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출산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음. 또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국민연금 의결권 → 주주권 행사로 확대

-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결권 차원의 소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대표소송, 사외이사 파견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국민연금의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기금운용 지침의 의결권 행사기준 지침을 주주권 행사기준 지침으로 확대하여 개선해야 함.
- 또한 현행 국민연금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추천에 대한 가입자의 추천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행사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 대표성, 민주적 운영 강화(기금운용본부 별도 공사화 반대)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함. 정부위원 및 일부 무늬만 대표인 가입자위원을 축소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에 ▶안전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전설명 요청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며, 가입자대표의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함.
- 또한 기금운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대체투자·보유주식 현황 등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해야 함.
-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원칙.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는 구조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입자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위험자산 확대 등 무분별한 수익추구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투기자본화할 것임.

2016.7.6.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라!

지난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신고가 3,698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70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부터 판매되었다는 점, 또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언론보도가 집중되면서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 모든 불행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인재근 의원실은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에 관련된 주요 기업 10곳(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에 투자한 총액이 3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불거진 2011년 당시와 비교해 1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가해 기업의 주범인 ‘SK케미칼’과 ‘옥시’에 각각 투자한 금액만도 3,308억 원, 1,272억 원에 이른다. 지금 분노한 국민들이 가해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 기업과 관련된 제품들이 마트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 기업들에 대해 계속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민연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책임투자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국민연금법,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사 사회적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들에게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가해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500조를 훌쩍 넘어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

료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편법 지원 의혹 등 국민연금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분명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이며, 국민연금은 바로 그 국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이 진작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력하게 실천하여 왔다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정비해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16.9.8.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 추진 관련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9.28. 국민연금지부 총파업 관련 지지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퇴출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일부 보수언론 또한 철밥통 귀족노조의 국민을 볼모로 한 이기적인 투쟁인 양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총파업은 국민을 위한 파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성과퇴출제 도입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조건 문제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도 정부는 수익중심의 재정지표와 수량적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줄 세우기 하면서, 돈벌이 경영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노후는 더욱 위협받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험의 성과주의 도입은 가입자 권리침해와 제도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이미 기획재정부 주도로 올해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사회보험이 고갈난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재정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지출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성과퇴출제는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 절감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목표설정과 치열한 실적 경쟁으로 인해 무리한 보험료 조정이나 직권 가입, 강제 체납처분 등이 남발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역시 지금보다 더욱 투기자본처럼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률 중심의 단기적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가슴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이나, 살상용 무기제조회사와 같이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공적연금 가입자가 총파업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성과퇴출제 도입은 공공기관 개혁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개악입니다.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같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공공서비스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올바르게 개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노후와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9월 2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11.15.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뇌물혐의 추가 공동 기자회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3. 주요 내용

1) 고발 취지

○ ‘박근혜게이트’와 정경유착

- ‘박근혜게이트’는 대통령과 그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를 넘어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은 정경유착을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음.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드러난 정황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요구됨.
- 재벌 총수와 그와 유착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에서 시작된 정경유착의 정황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재벌에 대한 특혜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에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최순실씨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

○ 정경유착으로써 ‘박근혜게이트’와 삼성

- 최근 드러난 바, ▲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 ▲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는 점 등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의 관

계에 대해,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이러한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 ‘뇌물죄’ 수사의 의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하 박상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이하 최순실) 등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권력을 뇌물을 통해 사고 팔았다’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의혹의 대상임.
-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인, 특정집단의 경제 권력 확장과 기득권 옹호를 위해 사고 판 것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
-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는 ‘최고경제권력이 뇌물을 통해 정치권력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임.
- 뇌물을 통한 정치권력의 매매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뇌물 사건의 몸통인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그 돈을 받아 국가권력 행사를 매도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과 처벌이 필요함.

2) 주목해야 할 사실과 드러난 주변 정황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이하 합병) 이전, 이재용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주)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었음.
- 이에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인 홍완선을 합병 주주총회 직전에 직접 만나는 등 여러 경로로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경우, 당시 구 삼성물산 지분을 제일모직 지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주)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에 반대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임. 합병 당시, 합병비율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이재용과 정반대의 이해관계에 위치함.
- 그러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음을 물론,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상승하자 오히려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이어감.

-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합병의 내용에서는 물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요구와 합병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함.
-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행동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재용 등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했고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과 만나는 등 국민연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로비를 펼친 정황이 확인됨.

○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 삼성은 2010년 승마단의 해체 이후 승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럭비단, 테니스단 해체 등 스포츠단 운영에 소극적인 방침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한승마협회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박상진은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직에 취임함. 이후 승마협회 회장직을 빌미로 대통령 및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합병계약이 체결되면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가처분 등을 제기하고 있던 2015. 5.경 최순실은 독일에서 회사 설립 준비를 시작하고, “말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지기 시작함.
- 2017.7.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고, 같은 날,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독일에서 설립하자, 박상진은 2015. 8.경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하여 직접 최순실을 만나 자금지원에 대하여 논의함.
- 같은 시기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자 승마협회에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삼성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승마협회는 2015.10.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었음.
- 이러한 정황은 박상진은 2015.8.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최순실에게 약 186억 원의 자

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어도 2015.7.24.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삼성 3대 세습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그 대가임을 추정하게 함.

- 또한 삼성전자는 2015. 9.경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독일로 송금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0억 원이 넘는 금액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를 구매하는데 쓰였고,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밖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을 코레스포츠에 송금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
- 이재용과 박상진은 합병 직후 삼성전자가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이재용의 사적 이익

-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2.18.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하였다고 함.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과 에스케이, 롯데, 포스코 등으로 추정됨.
- 2016.2.25.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함.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그런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6.20.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임.
-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임.
- 2016.3.1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촉구함.

※ 관련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03408>

- 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은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3) 뇌물죄의 적용 등

○ 이재용 등의 뇌물공여죄·박근혜대통령,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등의 성립

- 합병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행위라고 볼 수 있음.
- ▲ 합병이 삼성전자의 사업이나 이익과는 무관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총수의 아들로써 사실상 회사 정책을 결정할 핵심적 인물이라는 점 등에서 앞서 설명한 여러 정황과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자금은 뇌물로 볼 수 있으며 뇌물의 제공은 이재용, 박상진이 공모하는 등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이재용 등은 대통령의 대리인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재용 등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에게 부탁했을 것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이에 따른 엄벌이 필요한 상황임. 이재용 등은 합병 과정에서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됨.
-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재용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 이재용 등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박상진은 삼성전자의 사장으로써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총수일가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에게 자금을 제공함. 따라서 최순실 등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임.

- 이재용은 박상진의 배임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상법상 이사로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은 자신의 경영권 확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박상진의 배임 및 뇌물공여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이재용이 사실상 공모하여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재용 등은 이견희 일가의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회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취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회사의 가치를 침해하는 배임행위임.

4) 결론: 정경유착에 대한 엄벌과 뇌물죄에 대한 적용

○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 합병 결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독대하였고, 그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사장인 박상진과 회사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의 최순실 측을 방문하고 3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지원하고 186억 원 상당의 지원 약속을 하여 삼성전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른바 ‘정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최순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및 딸 정유라 앞으로 이재용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부터 35억 원의 뇌물과 이를 합한 총 186억 원의 금품을 지원받기로 약속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의로 인해, 이재용이 막대한 이득을 올렸으며, 2,000만여 명의 국민들의 노후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 결국 최순실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현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밖에 볼 수 없고, ▲ 최순실이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적극적 동의 및 지원 하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여 온 점 ▲ 뇌물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최순실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곧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 ▲ 박근혜 대통령 역시 뇌물 수수 및 약속 과정에서 이재용을 독대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분담하여 이재용 등의 뇌물제공을 가능하게 한 점 등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 대통령의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신뢰의 상실, 대통령과 정부 기능의 마비, 이로 인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부에 미친 심대한 피해와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대

통령과 최순실은 포괄적 뇌물죄의 공동정범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이재용 등을 비롯한 몇몇 재벌 총수들과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기도 했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주말(2016.11.13.)에,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함으로써,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박근혜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총수 일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함.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2016.11.16. 최순실-박근혜-삼성 비리게이트 국민연금 관련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정부는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에 삼성이 지배구조 재편 문제를 현안으로 제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였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했다.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로 당시 국민연금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찬성 결정을 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셈이다.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돌아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의문투성이였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엘리엇 펀드 등 외국계 자본 및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거센 반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합병비율(1: 약 0.35)이 삼성물산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에 두 배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상식적으로 볼 때 반대하거나 합병비율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에도, 또 외부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을 자체적인 투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은 오로지 찬성 결정을 위한 꼼수였다는 의혹이 짙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각 실장을 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는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비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부의 압력이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 행사지침에 기금운용본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곤란한 안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의결권 사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당연히 옳았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권한을 넘기라는 전문위원회의 요청에도 당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체 결정을 강행했다. 그 권한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행사할 경우 반대할 가

능성이 높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전에 있었던 SK와 SK C&C 합병과 관련해서는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규정된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는 판단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컸다. 요컨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합병 결정을 찬성한 것은 주주가치, 투명한 결정 시스템, 지침과 상식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 최순실과 삼성의 커넥션, 재벌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6일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 삼성물산 경영진 및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어제(15일)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을 뇌물수수죄 혐의 등으로 추가고발했다. 올해 5월에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제시한 비율(1대 약 0.418)로 재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은 합병 후 재상장된 2015년 9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788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한 적정 합병비율(1대 약 0.46)로 계산할 경우 손실액은 훨씬 더 커진다. 또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합병 결정전에 지속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된 이후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의구심도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연금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스스로 이재용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에 대한 삼성의 로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삼성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로비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그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투명한 운용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피해와 제도 불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삼성 커넥션이 드러난 이상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비정상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 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조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 역시 합병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어디 장난 칠 것이 없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건드리는가!

201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2016.11.24.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형표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에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회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 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 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텍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

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s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2016.12.1.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준식(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변희영(국민연금지부 위원장), 김금숙(사무금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기철(금융노조 부위원장)
- 발언3: 국민연금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청원 취지 및 참여방법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3. 청원 개요

- 청원인 모집기간: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금)
- 청원인 온라인 모집 주소: <https://goo.gl/forms/ecTyBEwJVyNQOMa02>
- 청원인 오프라인 모집: 주최단체 중심의 거리 모집활동 등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490,000,000,000원(사천구백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위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
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페이지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오너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견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견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견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 이견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견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첨부자료 2]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 과정에 관한 주요 사실

- ▶ 2014.12.18 : 제일모직 상장
- ▶ 2015. 1월 : 삼성증권 및 동부증권 보고서(제일모직 상장에 따라 향후 구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 구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를 적용이 예상되는 것이 현재 구 삼성물산 주가 하락의 원인임)
- ▶ 2015. 상반기 : 주요 건설사 주택공급 대폭 확대, 구 삼성물산 확대하지 않음
- ▶ 2015. 2월 :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프로젝트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 2015. 상반기 : 서울대학교 내 부설연구소 건설사를 구 삼성물산에서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경
- ▶ 2015. 3.경 :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함 (삼성은 1988년 6월 실업승마단을 창단하였으나 2010년 승마선수단을 해체한 이후 2014년까지 승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음. 당시 한 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이 2014. 6.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물려남)
- ▶ 2015.3.26.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11.43%(17,848,408주) 보유 공시
- ▶ 2015.3.27.~5.22.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지속적 매도(2,941,962주 순매도)
- ▶ 2015.5.13. : 구 삼성물산, 약 2조원(2014년 해외수주액의 25% 규모)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제안 착수지시서 수령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음
- ▶ 2015.1.2.~5.22. : 건설업 업종지수 28.7% 상승, 구 삼성물산 주가 8.9% 하락
- ▶ 2015. 5.~6.경 : 최순실이 독일에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 ‘말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고 알려짐¹⁾
- ▶ 2015.5.26. : 구 삼성물산, 합병관련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합병비를 1대 약 0.35)
- ▶ 2015.6.4.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삼성물산 지분 7.12%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공시, “합병비를 삼성물산에 불리, 합병반대”,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 가능하게 정관변경 요구 주주제안서 삼성물산에 제출
- ▶ 2015.6.9. : 엘리엇, 삼성물산 및 이사진 상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2015카합80582) 신청
- ▶ 2015.6.9. : 2015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하여 구 삼성물산은 과소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과대평가된 그 시점에 합병을 논의에 반대할 것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 요청됨.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결권 적극 고려해야”라는 논평²⁾을 발표
- ▶ 2015.6.9.-6.말 문형표가 국민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일부에게 전화하여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여 압력을 행사함. (한겨레 2016. 11.16. 기사)
- ▶ 2015.7.1.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1) 한겨레21, “최순실과 삼성 독일에서 수상한 관계” 제1135호(2016. 11. 7.)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611.html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38053>

- ▶ 2015.7.3. :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반대 권고
- ▶ 2015.7.3. : 국민연금, 구 삼성물산 주식 추가 취득으로 11.61%(18,671,098주) 보유
- ▶ 2015.7.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 홍완선이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하여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또는 재추진 가능성을 문의함. 3)
- ▶ 2015.7.7.~7.16.까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개최4)
- ▶ 2016.7.10.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 사건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끝까지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찬반 의원이 갈리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12명 중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을 결의하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음
- ▶ 2015.7.14.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지 않음)
- ▶ 2015.7.17. :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국민연금 합병 찬성, 국민연금 반대 가정시 부결)
- ▶ 같은 날 : 최순실 독일 현지에서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함 이후 2015. 11. 코레스포츠는 이름을 비덱스포츠로 바꿈. 주주는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 2인이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25,000유로임5)
- ▶ 같은 날 : 구 삼성물산, 2015년 하반기 서울 8곳에서 총 1만여 가구 공급계획 발표
- ▶ 2015.7.24.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이 참석한 청와대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오찬 간담회가 끝난 후 이재용 등 기업인 7명을 독대함
- ▶ 2015.7.28 : 구 삼성물산,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낙찰통지서 수령 및 공시
- ▶ 2015.7.31. : 일성신약 등, 합병을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
- ▶ 2015.8. : 박상진이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등과 독일을 방문해, 최순실을 직접 만나 자금지원 등 논의6).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지 승마협회에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엔 약 186억 원을 삼성이 지원하기로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음7). 한편 박상진(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인 승마협회는 같은해 10월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
- ▶ 2015.8.20 : 구 삼성물산, 주식매수가격으로 57,234원 통보
- ▶ 2015.8.26 : 일성신약 등,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 ▶ 2015.9.~10.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 체결 및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우리은행 강남지점에서 국내 B은행 독일 현지 법인 지점 및 여러 독일 은행을 통하여 송금.8) 이 돈 가운데 10억 원 넘는 돈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 V’를 사는데 쓰였으며,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외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를 코레스포츠에 송금하였다는

3)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알고도 찬성... 삼성가에 8천억 이익 안겨“ 비즈니스포스트, 2015. 10. 6.

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44721>

5) 매일경제, “최순실 모녀 獨기업은, 직원 단 1명, 매출 불분명한 ‘겉대기 회사’” (2016. 10. 18.자)

6) SBS, “[단독]삼성, 정부 지원 약속받고 280억 지원 계획” (2016. 11. 6.자 방송)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74256&oaid=N1003874450&plink=REL&coop=er=SBSNEWSEND

7) SBS “[단독] 미리 짠 삼성-최순실... 사실상 ‘정유라 프로젝트’” (2016. 11. 8. 방송)

8) 조선일보, “[단독] 삼성이 독일로 보낸 35억, 최순실 딸 명마 구입, 관리에 쓰였다” (2016. 11. 2.자)

보도⁹⁾도 있으며, 또한 삼성이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됨¹⁰⁾.

- ▶ 2015. 9~2016. 2 : 삼성,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후원
- ▶ 2015.10.26. :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 입금
- ▶ 2016.10.27. 미르재단 설립. 같은 날 박대통령 ‘시정 연설’ 발표(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 2016.1.12. :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 완료
- ▶ 2016.1.13. : 케이스포츠재단설립
- ▶ 같은 날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 ▶ 같은 날 : 전경련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시작
- ▶ 2016.1.18. : 박근혜 대통령 공식일정에도 없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직접 서명
- ▶ 2016.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성 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청구 1심 판결, 원고 패소, 주식 매수가격 57,234원 유지
- ▶ 2016.2.18. :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 포함¹¹⁾
- ▶ 2016.5.30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1심 결정을 취소, 주식매수가격 66,602원으로 결정

9) 한겨레 “삼성, 최순실씨 독일 법인에 매달 80만유로 송금” (2016. 11. 2.자)

10) 서울신문 “삼성, 최순실에 43억 추가 지원 확인”... 檢, 대가성 여부 추적“(2016. 11. 27.자 보도)

11) 한겨레 “박대통령 올 2월 19일에도 ‘총수 독대’ 드러나, 검찰수사”(2016. 11. 9.자)

[첨부자료 3] 청원인 온라인 모집 화면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1. 취지와 목적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이하, 직함 생략)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인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이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 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이 무단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2. 청원인 모집기간 : 2016년 12월 1일(목)~12월 12일(월)

3. 진행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4. 청원처 :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5.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필수항목

이름 *

내 답변

주소 *

번지수까지 모두 표기해주세요.

내 답변

남기고 싶은말

내 답변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 서명전달 외의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청원 내용을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에 전달하는 목적이 달성된 후 모두 폐기될 예정입니다.

☐ 동의합니다.

제출

Google 설문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마세요.

이 설문지는 참여연대 내부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악용사례 신고 - 서비스 약관 - 추가약관

Google 설문지

2016.12.14.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2016.12.27.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특검수사 관련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관계자들로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받았다고 한다. 또 특검팀은 어제(26일) 문형표 이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금일 다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순실·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이 직접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문 이사장의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자신의 보신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팔아먹은 것이다. 그런 자가 장관에서 물러나서 다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하고, 범죄 행위가 점점 명백해 지고 있는 지금도 이사장을 맡고 있다니 그 뻔뻔함의 극치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문형표 이사장은 당장 이사장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특검수사에 임해서 삼성물산-최순실·청와대 커넥션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한다.

애초 문형표는 절대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장관 시절 ‘보험료 폭탄론’, ‘세대간 도적질론’으로 끊임없이 국민연금의 불신을 야기했고,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감시를 축소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이번 사건도 가입자 대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무리하게 합병 찬성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일이 아닌가.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던 자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국민 노후마저 위협에 빠뜨린 것이다.

연 이은 소환조사와 삼성물산 합병 개입 의혹으로 문형표 이사장은 이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54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는 6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오늘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7년도 예산안, 인사, 보수, 직제 규정 개정 관련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도 어제 늦

게 갑작스럽게 서면결의로 변경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노후를 팔아먹고, 그 보은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일이다. 국민 노후를 아예 걱정하고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라!

2016년 12월 2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2016.3.21. 국민 노후소득 보장 관련 19대 국회 활동평가 이슈페이퍼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 기초연금·국민연금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

2016. 3. 21.

— < 요 약 > —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활동 성적표 공개 -

-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자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 < 요 약 > —

-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
-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페이퍼

2016-02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 기초연금·국민연금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

이 재 훈¹²⁾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행동 정책위원)

1. 들어가며

-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음. 그러나 정책과 비전 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임.
-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일 뿐 아니라, 10년 전인 2006년 43.9%임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그동안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함.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
-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공동으로 지난 19대 국회의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평가하고, 20대 국회의 입법과제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함.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법률 제·개정안 및 해당 국회의원

○ 평가 기준

- ILO의 ‘사회적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202호, 2012)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제시한 두

12) 법안에 대한 1차 선정평가는 김잔디 참여연대 간사,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으며, <연금행동 총선대응 TF>의 논의를 거쳐,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했음.

가지 전략에 근거해 ① 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함.

- 특히, 이러한 방향 하에서 ILO가 연금개혁 과정의 원칙으로 제시한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¹³⁾을 세부적인 평가내용으로 설정했음.

① 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 급여와 기여 간 보험수리적 집단적 형평성¹⁴⁾, ④ 건전한 재원, ⑤ 관리운용의 국가책임

○ 평가 내용

-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대상범위 확대), 정부의 재정적 책임,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한 긍정적 법안을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선정했으며 이와 반대로, 오히려 급여 및 대상수준을 축소하는 등의 법안들은 ‘노후 불안 법안’으로 선정했음.
- 또한 이러한 각 해당법안에 대한 내용적 평가를 기준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평가함.

[표-15]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기준	해당 법안 및 내용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 수급 대상범위 확대	○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 적용범위 확대(일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 급여 상향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폐지 ○ 연동방식 변경(물가→소득)	○ 급여(소득대체율) 상향
③급여와 기여 간 집단적 형평성	-	-
④건전한 재원	○ 중앙정부의 전액 국고지원	○ 기금운용의 민주적 운용 ○ 가입자대표성 강화 등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		○ 국가의 급여지급보장 명문화

13) ILO, 2010. *Extending social security to all : A guide through challenges and options*. ILO Social Security Department(17-18).

14) ILO는 ‘보험수리적 형평성’이라는 표현이 급여와 기여 간 강한 연계를 강조하는 사적연금의 특성을 의식하여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았고, 실제 논쟁적이기도 하다고 적시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는 기여에 따라 급여가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화된 사적연금과 차별을 두는 차원에서 ‘집단적(collective)’이라는 의미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런 내용적 의미를 감안해 평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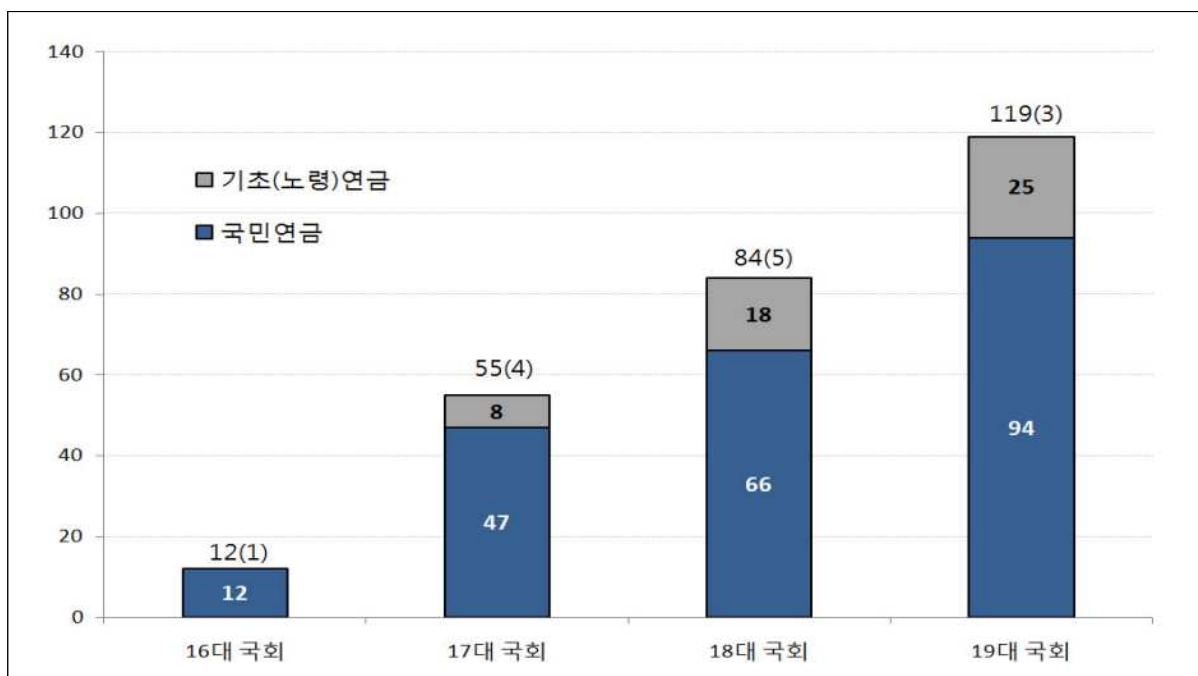
2. 법안 분석 및 평가

1) 역대 국회와의 비교

○ 기초·국민연금법안 발의는 지속적으로 증가. 16대 국회에 비해 발의건수는 약 10배 증가.

- 19대 국회의 기초·국민연금 관련 법률 제·개정 발의결과를 지난 16~18대 국회와 비교하면 아래 [그림-1]과 같음.
- 16대 국회(2000~2004)는 12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17대 국회(2004~2008)는 47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관련 법 8건(기초노령연금 5건, 기초연금 1건, 장애기초연금 1건, 효도연금 1건) 등 총 55건, 18대 국회(2008~2012)는 국민연금법 66건, 기초노령연금법 18건 등 총 84건, 그리고 지난 19대 국회(2012~2016)는 국민연금법 94건, 기초연금 관련 법 25건(기초노령연금법 12건, 기초연금법 13건) 등 총 119건의 법안이 발의됐음¹⁵⁾.
- 즉, 2000년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관련 법안 발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이후 2014년 기초연금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초연금 관련 법 개정안 발의도 활발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33] 16대~19대 기초·국민연금 관련 법안 발의 비교(2000년~2016년, 단위 : 건)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안은 정부발의 법안 숫자임.

15)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 것으로 처리함.

2)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국민연금 관련 법

○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이 통과된 경우는 매우 낮음.

- 19대 국회의 경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된 경우는 총 7건임. 이 가운데 의원입법은 2건, 유사한 법안을 수정·통합하여 위원장의 대안으로 가결된 경우는 5건임.
- 기초연금 역시 법 제정에 대한 정부안(2014년)과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2015년) 등 2건 만이 국회를 통과했음.
- 이는 발의된 법안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수준임.

[표-16] 19대 국회 통과된 기초·국민연금 관련 법

구분	의결일	제안자	주요내용
국민연금법개정	2013. 7.30	김재원 등 10인	○ 사무소 소재지 전라북도로 개정(기금이사 관장부서 포함)
	2013.12.19	위원장(대안)	○ 국가가 연금급여 안정적·지속적 지급위해 필요시책 수립시행 ○ 연금보험료, 급여액, 수급요건 등은 장기재정 균형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밖에 경제변동에 따라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14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	2014.12.24	위원장(대안)	○ 연금산정기준이 기준소득월액으로의 변경에 따른 반영 ○ 퇴직급여를 받은 직역가입자의 연계 신청기한 폐지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포함, 퇴직급여 제한자가 연계 신청할 경우 반납금액 합리화 등
국민연금법개정	2014.12.29	위원장(대안)	○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고, 당연 사업장 가입자로 함. ○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임금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 ○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 ○ 연금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지역가입자의 경우 분할납부 가능 ○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경우 투자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 고려 등
	2015. 5.6	위원장(대안)	○ 공단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을 국민으로 확대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	2015.12.9	박윤옥 등 10인	○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 연계대상자를 '연금가입자였던 자'로 확대
국민연금법개정	2015.12.9	위원장(대안)	○ 공단 업무에 조사연구와 국제협력추가. 연구원 설립근거 신설. 상임이사 4명으로 1명 상향. ○ 분할연금 지급 특례 등
기초연금법제정	2014. 5.10	정부	○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연금법으로 변경 - 기준연금액을 20만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국민연금가입자는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A값의 2/3감액하되, 기준연금액의 1/2부가연금 지급. - 5년마다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해 기준연금액 조정 등
기초연금법개정	2015.12.31	위원장(대안)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이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 제공(남인순 의원) ○ 관계공무원이 수급자 조사할 때 권한 표시 증표 및 조사기간, 범위 등 기재된 서류 제시(양승조 의원) ○ 수급자 사망 신고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한 것으로 간주(주승용 의원)

3)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

- 법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앞서 언급한 평가기준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발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많은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임.

(1) 기초연금 관련 : 급여와 대상 확대, 전액국고 부담하는 법안

-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 확대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치 과제였음.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014년 5월 국회 통과하기 이전까지, 대상과 급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6건 발의됐음.

[표-17] 19대 국회 기초·국민연금 관련 법안발의 개요

발의의원 (발의일)	대상	급여	재원	비고
한명숙 등 126인 (2012. 5. 30)	70 → 80%수준	5% → 10%로 상향		
박원석 등 13인 (2012. 7. 3)		2017년까지 10%까지 단계적 상향	전액국고부담	추가인상은 <연금제도 개선위> 설치·논의
유재중 등 11인 (2012. 9. 19)		2028년까지 10%까지 단계적 상향	전액국고부담	공단으로 업무일원화
김용익 등 10인 (2013. 6. 13)		2014년부터 10%로 상향	전액국고부담	공단으로 업무위탁
유성엽 등 11인	70 → 90%수준	5% → 15%로 상향	전액국고부담	
심상정 등 10인 (2014. 3. 13)		2014년부터 10%로 상향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 통과 이후

남인순 등 31인 (2014. 5. 28)	70 → 80%수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양승조 등 10인 (2014. 9. 15)	70 → 80%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부부감액 규정 폐지		기초연금 압류금지 전용계좌 신설
김성주 등 25인 (2014. 11.12)			전액국고부담	
주승용 등 10인 (2015. 6. 30)			국가부담 비율 하한 을 40→ 80% 상향	
이목희 등 10인 (2015. 7. 9)			지자체 자체의 급여·수당 지급 시 국가가 일정수준 추가 지원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 대상 확대는 한명숙 등 126인이 70%에서 80%로, 유성엽 등 11인이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급여 확대는 유재중 등 11인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2028년까지 10% 달성을 위해 단계적 상향하는 가장 소극적인 방안부터, 박원석 등 13인은 2017년까지 10%, 김용익과 심상정 등 각 10인은 당시 즉각 10% 상향, 유성엽 등 11인은 즉각 15%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 2014년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기존 기초노령연금법 폐지)이 제정된 이후에는 정부안이 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등 31인, 양승조 의원 등 10인에 의해 각각 발의됐음. 이들 법안은 대상범위를 80%까지 확대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액 국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박원석, 유재중, 김용익, 유성엽,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 주승용 의원 등 10인(2015. 6. 30.)은 국가부담 하한비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액 국고부담은 아니지만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자는 것임.

○ 기초연금 급여확대 위한 법안발의는 많았으나, 결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정부안 통과.

- 기초연금 급여확대는 단계적으로 할지, 또는 즉각 시행할 지 등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최소 1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며, 대부분 법부칙 시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해야한다는 것이었음. 이는 현재의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함. 정부의 기초연금법 통과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도 같은 맥락임.
- 현행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잔여적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향후 더욱 심각해질 고령화시대를 감안해,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대상과 지급수준을 더욱 보편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여야 모두 기초연금 자원 전액국고부담 법안 발의. 그러나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함.

- 기초연금 소요재정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 역시 여·야 의원 모두에서 제출됐음.
- 현행 기초연금의 경우,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노인인구 비율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소요재정의 40~90%만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복지사업이자, 지자체의 재정부담 및 다른 복지서비스 축소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액 국고로 지급되도록 개정해야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방치됐음.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공론화 됐으나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절대빈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곧바로 감액돼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최저생계비의 생계급여는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임.
- 노년유니온, 내만북, 빈곤사회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이러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제기 하며 공론화하고 있으나,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는 아직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2) 국민연금 제도관련 : 급여의 적절성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

① 국민연금 급여 및 지급보장

-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급여삭감¹⁶⁾을 전후한 한국의 연금정치는 기금고갈론에 입각해 단지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축소 지향적 개혁이 중심이었음.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이러한 재정안정화 위주의 논의와는 달리,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과 노후빈곤 해소라는 연금 제도의 기본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혁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음.

[표-18] 국민연금 급여 및 지급보장 관련 19대 국회 발의법안

구분	발의의원 (발의일)	내용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김재원 등 10인 (2012. 7. 12)	- 국민연금 급여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책임 명문화
	남인순 등 20인 (2012. 7. 23)	
	김성주 등 11인 (2012. 11. 27)	
급여삭감 중단	김성주 등 15인 (2014. 12. 1)	- 국민연금 명목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나,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대체율은 20%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국민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8년부터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도록 함.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 지급보장 법제화, 급여상향 등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계기, 결국 무산됨.

- 먼저 김성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명목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자동 삭감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급여삭감을 중단하고, 45%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임. 이는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 삭감해야한다는 기존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던 것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 급여의 적절성’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16)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존 60%였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2008년 50%로 10%p삭감되고,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되고 있음.

- 또한 김재원, 남인순, 김성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책임이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음. 이는 국민연금 신뢰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법안을 제출해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기재부 등의 강한 반대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음.

②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핵심적이고 고질적인,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임. 현재 국민연금 적용대상 기준으로 하더라도, 납부예외자(약 457만 명), 1년 초과 장기체납자(약 111만 명) 등 최소 약 568만 명(27.1%)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크레딧 신설 또는 개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됐음.

[표-19]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관련 19대 국회 발의법안

구분	발의의원 (발의일)	내용
보험료지원 등	최동익 등 19인 (2012. 8. 14)	영세지역가입자(기준소득월액 일정 금액 이하)에게 보험료지원
	이재영 등 10인 (2013. 5. 31)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대상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남인순 등 11인 (2015. 11. 19)	청년층 중 일정연령(20세, 30세)에 도달했을 때, 납부사실이 없을 경우 3개월 간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 소득으로 간주 (보험료 전액 국가지원)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강기윤 등 10인 (2015. 12. 8)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인정 (사용자의 보험료 절반부담)
산재크레딧 (신설)	신경림 등 10인 (2015. 11. 24)	산업재해크레딧 도입(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군복무 크레딧	송영근 등 13인 (2013. 4. 25)	군복무 크레딧 적용 6개월에서 군복무 전체기간으로 확대
	민현주 등 10인 (2013. 12. 31)	
	이언주 등 13인 (2013. 7. 19)	군복무 크레딧 6개월 이외 나머지 기간에 대해, 병역의무 수행자가 나머지 기간에 대해 1/4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국가가 3/4을 지원
출산크레딧	남인순 등 11인 (2015. 10. 23)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첫째자녀도 12개월 가입 추가산입/ 1자녀 초과 1명당 12개월 가입기간으로 산정)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미 처리.

- 최동익 의원 등 19인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지역가입자에게, 이재영

등 10인은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 현행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평균 14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용주에게 보험료 일부(신규 60%, 기존 40%)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 이들 법안은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하여 보험료 지원방식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보다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음. 다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경우, 대상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따라 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
- 또한 신경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임. 현재 약 130~200만 명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본인이 전액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거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 이전에, 우선적으로 사업자 가입자로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출산크레딧의 양육크레딧 확대재편과 청년크레딧 도입도 좌초.

-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이 있으나, 제한적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가 미흡함.
- 먼저 출산크레딧의 경우, 박윤옥 의원 등 11인은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음. 현행 출산크레딧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하나, 둘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한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반면,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개정안은 출산만이 아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고, 첫째 자녀를 포함해 자녀 1명마다 12개월 가입기간 추가산입 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임.
- 군복무 크레딧 역시 병역의무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임. 현행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병역의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 이외, 남인순 의원 등 11인은 청년에 대한 크레딧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이는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평균구직기간 역시 12개월이 넘을 뿐 아니라 OECD국가보다 평균 4~5년 정도 입직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비록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을 3개월 간 인정해주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형성과 연금 가입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4)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법안

(1) <노후불안 법안> 개요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노후불안 법안>으로 정부가 발의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정희수 의원, 박윤옥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독립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법안으로 선정함.

[표-20] 19대 국회 ‘노후 불안’ 법안

구분	발의의원 (발의일)	내용	결과
기초연금	정부 (2013. 11.25)	전체노인 중 하위 70% 대상은 유지 급여는 ‘(기준연금액- $\frac{2}{3}$ *A급여액)+부가연금액’으로 기준 연금액은 2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추가. 소비자물가연동방식으로 변경	통과 (2014. 5. 4)
국민연금(기금)	김재원 등 10인 (2012. 6. 22)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및 독립성 보장	계류
	정희수 등 16인 (2015. 7. 27)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을 전담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 설립.	
	박윤옥 등 10인 (2015. 8. 17)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민연 금기금운용공사 설립	
국민연금(제도)	정희수 등 28인 (2015. 6. 16)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본인 선택에 따라 기준소득월 액의 4/100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납입하며, 운용수익률은 기금운용수익률과 연동.	상임위 접수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정리.

○ 정부의 ‘기초연금법’ 선정이유

- 2014년 5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 급여수준이 확대되고 인상시기도 앞당겨진 것이나, 이는 2007년 국민연금 급여삭감이라는 맥락 하에서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함.
- 2007년 국민연금 삭감하면서(60%→40%) 낮아진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이었음. 당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5%(국민연금 전체 가입자평균소득 대비)의 급여로 시작했으나, 법 부칙에 2028년 1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함. 기초연금 급여확대(10%)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실제 대상은 확대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

금 급여는 덜 주는 방식으로 도입됐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부터 차등 지급되고, 20년 이상인 경우 소득하위 70%에 속하더라도 기초연금 급여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함.

- 특히, 소비자물가 연동방식으로 변경돼 갈수록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수준은 더욱 낮아지는 형태로 도입했음.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율은 10%수준이나 2022년은 7.6%, 2028년 6.2%, 2036년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5%로 떨어지다가 2050년엔 3.7%, 2060년 3.1%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¹⁷⁾. GDP대비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재정추이를 살펴보다도, 현행 기초연금을 대선공약이 지켜졌을 경우와 비교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오히려 기존 기초노령연금(2028년 10%로 상향)보다 오히려 갈수록 낮아지게 됨¹⁸⁾.
- 정부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향후 더욱 심화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해소하기엔 함량미달임.

○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관련 법안 선정이유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내용은 현재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별도의 공사를 신설하겠다는 것임.
- 2015년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규모는 약 507조로 명목GDP대비 약 29.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847조원 2030년 1,732조원으로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99%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투자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위험자산, 해외투자 및 위탁투자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더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더 높여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수익률 중심의 기금운용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것임. 그러나 고위험 투자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 실제 1%p 초과수익 추구할 경우, 변동성은 약 3배(4.19%→12.69%), 손실확률은 약 200배(0.05%→10.42%) 이상으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¹⁹⁾.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문성과 위험자산비중이 높았던 세계 주요 연금의 손실은 -20%안팎에 달했음.
-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면 수익률이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현실에 비춰보면 전혀 사실과 다름. 실제 운용위원 모두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투자공사(KIC)의 사례를 보면 투자가 개시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수익률이 4.02%로, 국민연금 6.33%에 비해 낮은 수준임.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13.71%에 달했음.
-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운영방식이나 장기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불확실한 ‘수익률 극대화’만을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기금의 안정

17)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최동익 의원실) 제출자료(2014).

18) 2014년 기준 GDP대비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지출비중은 0.6%, 기초연금은 0.8%이나, 2028년 이후엔 지출비중이 역전하게 됨. 2030년 기준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GDP대비 1.5%, 현행 기초연금은 1.4%, 2040년엔 2.1%와 1.9%, 2060년엔 2.8%와 2.4%로 격차가 점차 벌어지게 됨.

19)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고찰”, 2008.

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조차 위협하는 것임.

○ 국민연금 저축계정신설 법안 선정이유

- 국민연금에 저축계정을 신설해 임의로 가입자가 추가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률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과 연동하는 법안 개정임. 이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사적연금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연금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이러한 임의가입은 추가적인 기여능력을 갖춘 중상위층 이상의 가입자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개선노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3.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평가

1) 평가개요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평가 기준
 - ILO가 제시한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두 가지 핵심전략(적용범위의 포괄성, 급여수준의 충분성)과 연금개혁의 목표로 제시한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집단적 형평성 ④건전한 자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함.
- 평가 방식
 - 국민 노후와 관련된 핵심적 법안인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내용을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재분류함.
 - 앞서 선정한 <지못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0.5점, 공동발의 의원은 0.3점 부여함. 반대로 <노후불안 법안>을 발의한 경우는 패널티를 적용해 대표발의 -0.5점, 공동발의 -0.3점 부여함.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한 정부의 기초연금법의 경우, 찬성/반대 표결행위를 기준으로 각 점수를 부여했음.
 -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
- * 점수는 의원 간 상대적 평가를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님.

2) 평가 결과

- 법안 발의 자체가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이 될 순 없으나, 주요 정책은 법률로 결정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지표가 될 수 있음.
- 위의 평가개요에 따라,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을 중심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표-21]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민 노후보장 활동평가(법안 발의 및 내용 기준)

소속	의원 (총 27인)	평가항목(법안내용)						소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적정급여 /지급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 민주성·안정성	대상범위 확대	급여 확대	정부재정 책임강화	
민	김춘진	○×		○	○○	○○○	○	2.1
	김성주	◎◎○	○	◎	○○	○○○○	◎○○	5.0
	김용익	○○	○○	○	○○	◎○○	◎	3.7
	남인순	◎○	◎◎○		◎○	◎○○	○○○	4.9
	안철수					○		0.3
	양승조	○○	○		◎○	◎○○○	○○○	4.0
	이목희	○○	○○	○	○○○	○○○	◎○	4.1
	이언주(상)	○	◎○	◎	○	○○○	○	3.1
	인재근(하)	○			○	○		0.9
	최동익	○○○○	◎○	○	○	○	○○	3.2
새	이명수	×		×		×		-0.9
	김기선(하)			×		×		-0.6
	김명연		○			×	○	0.3
	김정록	○	○	×		×	○	0.3
	김재원(하)	◎		×		×		-0.3
	문정림	×		×		×		-0.9
	박윤옥(하)			×		×		-0.8
	신경림		◎			×	○	0.3
	이종진(하)					×		-0.3
	김현숙(상)	×				×		-0.6
	류지영(상)					×		-0.3
	신의진(상)							
	유재중(상)		○			×		
	김희국(상)					×		-0.3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 먼저,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국

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나 사각지대 해소 등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강기윤 등 10인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으나, 대부분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의했음.
- 개별 의원들을 살펴보면,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 ▷기금운용의 가입자대표성 및 민주적 운용강화 ▷기초연금의 전액 국고지원 등을 대표발의하며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했음. 근소한 차이로 남인순 의원이 두 번째로 높았음.
- 반면 새누리당 이명수, 문정림 의원이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으며, 그 뒤를 이어 박윤옥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을 대표발의하 등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됨.

4. 마치며

○ 지금까지 19대 국회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법안에 대한 내용적 분석을 통해 국민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지못미 법안)과 정반대로 국민노후를 위협하는 법안을 살펴봤음.

○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19대 국회의 성적은 초라한 수준임.

- 국민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갈수록 노인빈곤율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전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련 법 제·개정 논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정작 국민노후를 위한 법안은 통과는커녕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음.
-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이는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지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논의키로 했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역시 사실상 방치했음.

○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노후를 위해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에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책 마련 등.

-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
 - 반면,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 공사화나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개악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정당이 제시한 정책공약은 19대에서 법안으로 제시된 의미 있는 내용조차 축소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기존 정치권은 19대 활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2016.4.6. 20대 총선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연금행동 보고서	2016
----------	------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연금행동 총선대응 TF

1. 각 정당별 공약내용 및 평가

1) 새누리당

(1) 공약내용

구분		공약
기초연금		없음
국민연금	제도	○ 경력단절 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확대 ■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허용. 446만 명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확장할 예정. ■ 청년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창업크레딧/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확대 - (창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 추가지원(4.4만 명) - (취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보험료 10% 추가 지원(30만 명)
	기금	없음
기타		없음

(2) 약평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커질 노후불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방향성, 제도적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음.
-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해

법 없이 지역적 수준의 제도개선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① 전업주부의 추납허용

- 국민연금이 다른 사적연금보다 수익비가 높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임의가입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2010년 약 9만 명 수준이던 임의가입자는 2014년 24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약 84.3%가 대부분 소득이 따로 없는 전업주부임.
- 현행법상 추후납부 대상은 납부예외기간(실직·휴직·사업 중단)이나 군복무기간으로 한정돼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으면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허용하겠다는 것임. 즉 임의 가입하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50대 중반이 넘는 전업주부가 핵심 수혜대상임. 이는 이미 지난 2015년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다시 공약으로 내 건 것임.
-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의 핵심이 출산 및 양육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양육 크레딧 도입 등에 대한 대안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음.

② 청년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확대

- 현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월 소득이 14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기준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나 저소득 지역가입자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상황이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음.
- 청년이 창업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 추가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일 뿐,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는 크지 않음(예컨대, 최대지원액은 신규가입기준 월 소득이 139만원인 경우, 1만 2천원 수준에 불과함). 또한 대상범위 및 지원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정책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인지 회의적임.
- 기존 두루누리 사업에서 청년의 경우 10% 추가 지원하는 ‘취업 크레딧’ 도입 역시 사실상 크레딧 제도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청년실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첫 취업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는 추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대상이 협소해 사각지대 해소효과 역시 미미함. 청년실업문제가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감안 할 때,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제대로 된 ‘청년 크레딧’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2) 더불어 민주당

(1) 공약내용

구분		공약
기초연금		○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 2016년 70% 어르신에게 20만원 균등지급.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를 최소 45% 유지(추가삭감 중단) ○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 도입 -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 4천원)을 정부가 3개월 납부. -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최저보험료 납부.
	기금	○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연 10조원, 10년간 100조 투자. -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가칭 국민안심채권)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매입. 채권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 진행(국채투자 수익률에 준하는 수익보장) - 채권으로 자금 확보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 직접 수행
기타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책임 및 관철은 일자리 제공

(2) 약평

-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관점이 분명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음.
- 또한 공공주택 및 보육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공약은 기존 금융 수익 편향적인 기금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정 수익은 담보하면서도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한 긍정적 공약이라 평가할 수 있음. 기존 사회서비스가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지니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왔는데, 이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① 기초연금

-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별지급 방식을 개선해 현행 기초연금 대상자(소득하위 70%)에게 균등하게 20만원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그리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임(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15%로 상향).
- 현재 노인빈곤이 49.6%로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이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2020년 34.2%, 2030년 40.9%, 2040년 54.4%, 2050년 65.4%로 국민연금 제도성숙에 따라 나아지긴 하나 여전히 낮은 상태이고, 국민연금 급여율 역시 실질 가입기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도 20%를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확대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표-22] 기초연금 방안별 소요 예산 비교

	2016년	2018년
현 기초연금제도	10.9조원	12.3조원(0.62%)
더불어민주당 대안	11.5조원	18.7조원(0.94%)

* 자료 : 기초연금공약 최종보도자료(2016.3.9.), 괄호 안 수치는 GDP 대비 예산 비중

②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제도

- 기초연금 15% 급여확대와 함께, 2028년 40%까지 자동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45%에서 유지하고 추가적인 삭감을 중단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이는 국민연금 축소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애초 국민연금제도 취지에 맞게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취업장려 가입지원제도 도입의 경우, 새누리당이 취업한 저임금 청년노동자에 대한 일부지원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연령(20세, 30세)에 도달할 경우, 각 3개월 동안 최저보험료를 정부가 납부해주는 크레딧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가입지원이 짧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나 중소영세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 정책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음.

나.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연 10조원, 10년간 100조원 투자하겠다고 밝힘. 투자 방식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으로 이루어질 예정 ①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가칭 ‘국민안심채권’) → ②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 매입 → ③ 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투자 사업 시행 → ④ 연기금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방식으로 진행. 국민안심채권은 시장유통을 하지 않되 국채투자 수익률에 준하는 수익 보장하게 됨(미국 연기금 투자방식).
-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현재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에 국한돼 제시됐으나, 공공병원이나 공공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3) 국민의당

(1) 공약내용

구분		공약
기초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생애주기별 노후소득준비 프로그램 마련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 구조개혁(1소득자 1연금체제로 구조개혁) - 가입자구조 단순화, 경력단절 여성의 추납제도 허용범위 확대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전액 부담(300인 이상 사업장 한정) ○ 양육크레딧 도입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확대 등
	기금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최소수익 보장.
기타		

(2) 약평

-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기초법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폐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양육크레딧 도입 등 긍정적인 공약이 제시돼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전액부담 역시 참신함. 그러나 전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제시보다, 단편적인 현안 제도개선 수준에 국한돼 있음.

① 기초연금

-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문제나, 기초법 수급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해결이 공약으로 제시돼 있음.

② 국민연금

- 1소득자 1연금이라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력단절 여성의 추납허용 이외 구체성을 찾아보기 어려움.
- 양육크레딧 도입이나 군복무 크레딧 기간 확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된 점에서 긍정적임.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사회보험료는 전액 기업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지불능력 있는 규모 있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징벌적 또는 억제유도 측면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참신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10인 이상 300인 미만에 대한 대책 등 현행 제도와 연계된 종합적 관점과 대책,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적 투자로 활용한다는 취지는 엿볼 수 있음. 그러나 ‘청년희망임대주택’에 국한해 있을 뿐 공공사회서비스분야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방식이나 목표, 재정추계 등 구체성이 떨어짐.

4) 정의당

(1) 공약내용

구분		공약
기초연금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 없이 20만원 지급 - 1단계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대상범위 확대(70%→모든 노인). 소득 연동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가치 보장 - 2단계 :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이 30만원 지급(국민연금 급여인상 고려) ○ 기초생계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제외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 국민연금 불신해소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2> 신설 : 월소득 14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 양육크레딧 확대전환, 군대 및 실업크레딧 확대
	기금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2) 약평

- 전반적으로 노후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관점과 비전이 분명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비전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설계·제시하고 있음.
- 특히 다른 정당과는 달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는 공약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문제 역시,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 2’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역시 의미 있다고 평가함.

① 기초연금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별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차등 없이 균등 지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더해 물가 연동방식을 기존 A값 연동으로 전환해 중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향후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나, 대상범위를 현행 70%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남. 기초연금에 대한 보편성을 강화해 행정비용이나 억울한 탈락자를 줄이는 대신, 일부 고소득 노인에게 대해

서는 클로백(clawback, 환수)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보임.

② 국민연금

- 2028년 40%까지 삭감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50%로 다시 상향하는 한편,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정치권의 기금고갈 공포와 세대 간 갈등 조장에 의해 훼손되어 왔음. 국민연금 급여를 상향하고,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애초 제도취지에 맞게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적정수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국민연금 사각지대문제는 지역 저소득층이나, 영세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임에도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음. ‘두루누리 사회보험2’를 신설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출산양육과 군복무, 직업훈련 등의 기간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사회적책임투자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각 정당별 19대 총선공약과의 비교

1) 새누리당

구분		19대 총선공약	20대 총선 공약
기초연금		-	-
국민연금	제도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의 추납 허용 ○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 창업크레딧 /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
	기금	-	-

- 19대 총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이 일관되게 부재함.

2) 더불어민주당(구 민주통합당)

구분		19대 총선공약	20대 총선 공약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인상 ○ 대상자 80%로 확대	○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기초연금 혜택 제공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중지, 소득대체율 최소 45%유지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강화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개별 여성농업인도 지원	○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 도입
	기금	-	○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 19대 총선 당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자를 전제노인의 80%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고, 관련 법 개정 등도 추진했으나 20대 총선공약에서는 현행수준인 70%를 유지하고 있는 대신, 급여수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 출산크레딧은 확대되지 않았음에도 20대 총선과제에서는 제외됐음.
- 전반적으로, 19대 총선에 비해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3) 정의당(구 통합진보당)

구분		공약
기초연금		○ 2016년 이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단계적으로 3배 인상계획 입법화 ○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차등 없이 20만원 ○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상향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 ○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 양육크레딧 확대전환, 군대 및 실업크레딧 확대
	기금	○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에 100조 투입(50조원 국민연금기금에서 재원조달)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 19대 공약에 비해 20대 공약이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음.

- ‘구 통합진보당’ 당시 19대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1인 1연금제는 현재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국민연금기금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원투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3. 각 정당 간 비교

- 각 정당의 노후소득과 관련한 공약 유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	×	○	○	
			급여 확대	×	○ (10→15%)	×	○ (10→15%)
			대상 확대	×	×	×	○ (70%→100%)
			기초법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보장	×	○	○	○
국민 연금	제 도	국민연금 급여 확대		×	○ (최소 45%)	×	○ (50%)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	×	○
		사각 지대 해소	청년, 여성	△	○	○	○
			비정규노동자	×	×	○	○
			중소영세 지역가입자	×	×	×	○
	기 금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확대		×	○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 등)	○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국공립보육 등)

○ 2016.11.21.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이슈페이퍼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2016. 11. 21.

칠레 민영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 재 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행동 정책위원)

< 요약 >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를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 요약 >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게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

②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을 둘러싼 상황과 쟁점 -

이 재 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행동 정책위원)

민영연금을 반대하는 칠레 국민들의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칠레 전역에서 1990년 이후 최대 규모의 행진이 3차례 진행된 데 이어,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이 전개됐다.

칠레는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민영연금을 도입했는데, 국제금융기구와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가장 성공적인 개혁, 모범적인 모델로 칭송해왔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칠레 국민들은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유산인 민영연금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을 재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최근 칠레의 ‘민영연금 반대운동(No Más AFP)’을 통해 칠레 민영연금의 문제점, 2008년과 최근 연금개혁 과정과 쟁점, 그리고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1. 들어가며

○ 26년만의 최대 규모 대중 집회,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 최근 2016년 10월 16일, 폭우에도 불구하고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만 7만 명 이상의 칠레 국민들이 ‘민영 연금(AFP)’²⁰⁾을 반대하는 세 번째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음.
- 앞선 8월 21일에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60만 명 이상, 그리고 전국 50개 도시와 250개 지역에서 40만 명 등 1백만 명 이상이 행진에 참여했는데, 이는 17년 간 지속된 피노체트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1990년 이후 가장 최대 규모의 대중 집회였음²¹⁾.
- 이를 주도하고 있는 ‘민영연금 반대 전국모임(No Más AFP)’²²⁾은 11월 4일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 총파업을 전개함. 노동조합의 파업뿐 아니라,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며, 시민들은 물건을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않는

20) AFP는 ‘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의 약자로, ‘민영연금 관리회사’를 의미하지만, 실제 민영연금(private pension)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음.

21) Gligorevic Tihomir, “Chile: 600,000 March in Santiago Against Pinochet – Era Pensions System,” InSerbia Network Foundation (2016. 8. 26).

22) 공식 명칭은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NO+ AFP’ 임.

등 14개의 노동자와 시민의 활동지침을 통해 강도 높은 실천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최대노조인 칠레노총(CUT: Central Unitaria De Trabajadores) 역시 11월 3일 민영연금 반대에 찬성하며, 적극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그리고 11월 4일 총파업 당일에는 거리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으며, 버스가 불타고, 많은 연행자가 발생하는 등 극렬한 항의와 행진이 이어졌음.

○ 칠레 국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 민영연금 반대와 국민연금 재도입

- 대규모 시위의 발화점은 지난 7월, 전직 장관의 배우자가 경찰공무원을 은퇴하고 받는 군인연금액이 매월 7,800달러(약 894만원)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부터임²³⁾. 반면 민영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급여는 매달 평균 315달러(약 36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칠레의 최저임금인 384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²⁴⁾. 그러나 칠레 국민들의 보다 근본적인 분노와 불만은 민영연금 체계의 누적된 문제 때문임. 그래서 거리로 나선 칠레 국민들의 핵심구호 또한 ‘민영연금 폐지’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재도입’하라는 것이었음.

“나는 한평생 일만 했다. 이제는 그만두고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내가 더 늙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 Luis Montero(69세, 시위참여자. 월 연금액 150달러) - 뉴욕 타임즈(9/11)

○ 실패한 민영연금과 개혁을 둘러싼 갈등

- 칠레의 민영연금은 낮은 급여수준, 광범위한 적용배제, 소득 및 성(gender)에 따른 불평등 심화, 높은 수수료부담과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음.
- 2006년 민영연금 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내건 중도좌파연합(SPD;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연합)의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00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음. 개혁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유사한 ‘연대연금(SPS ; Sistema de Pensiones Solidarias)’²⁵⁾을 도입하는 한편, 민영연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음. 이는 재정확대와 규제강화를 통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였으나, 기존 민영연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됐음.
- 2013년 재선한 바첼레트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대통령 자문위원회(일명, 브라보위원회)를 구성해 현행 민영연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자본의 압박과 제도적 제약, 시민들의 ‘민영연금 반대와 국민연금 재도입’ 요구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음.

23) 1981년 피노체트 군부가 공적연금을 민영화할 당시, 군인연금(군인·경찰; 칠레 경찰은 국방부 소속임)은 그대로 유지됐음.

24) Bonnefoy, Pascale, “With Pensions Like This (\$315), Chileans Wonder How They’ll Ever Retire,” New York Times (2016. 9. 11).

25) 연대연금(SPS)은 기초연금 성격의 기초연대연금(PBS : Pension Basica Solidaria)와 보충연금 형태의 연대연금기여(APS : Aporte Previsional Solidario)로 구성돼 있음.

[표-25] 칠레의 연금민영화 이후 주요 연금개혁 흐름

년 도	내 용
1981년	- 피노체트 군부는 1980년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부과방식(PAYG)의 확정급여형(DB)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완전적립방식의(FF) 확정기여형(DC) 사적연금으로 도입함(Decree Law 3.500)
1990년	- 군부독재 종식
2006년	- 바첼레트 대통령, 연금개혁자문위원회(일명, 마르셀 위원회) 구성
2008년	- 연금개혁 법안 통과(연대연금 도입, AFP 개혁 등)
2014년	- 바첼레트 대통령 재임, 연금개혁자문위원회(일명, 브라보위원회) 구성
2015년	- 브라보위원회 최종 보고서제출(9월)
2016년	- 법 개정안 발의 보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 중. - 근본적 개혁 요구하며 8월, 9월, 10월 대규모 행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 자료 : Fabio Bertranou(2016 : 13)에서 일부 추가.

2. 칠레의 연금민영화와 2008년 개혁²⁶⁾

1) 칠레의 연금민영화(1981년) :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

○ 연금민영화 :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유산

- 칠레는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인 1981년, 기존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DB)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국가를 대신해 민간연금관리회사(AFP)에 의해 관리되는 완전적립방식의 개인저축계정을 둔 확정기여형(DC) 사적연금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임.
-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는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연금개혁 모델로 칭송받으며, 다른 국가의 연금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실제 칠레 연금개혁 이후 세계 30개국 이상(특히 남미와 동유럽 체제이행 국가)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연금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이후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지배적 흐름을 형성해왔음.

26) 이 부분은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연금민영화 경로변화 비교연구”(이재훈, 2014), “연금민영화 사례분석을 통한 비판적 평가”(이재훈, 2016)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칠레 연금민영화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2008년 연금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을 참고하길 바람.

[표-26] 라틴아메리카의 연금민영화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개혁 당시)

모델 ²⁷⁾	국가(민영화 시기)	체계	기여	급여	재원 체계	관리
대체형	칠레(1981), 볼리비아(1997), 멕시코(1997), 엘살바도르(1998), 도미니카공화국(2003-2006), 니카라과(2004, 미이행)	사적	확정	-	완전적립	민간 ^a
병렬형 (선택형)	페루(1993), 콜롬비아(1994)	공적 or	-	확정	부과방식 ^b	공공
		사적	확정	-	완전적립	민간 ^a
혼합형	아르헨티나(1994)	공적 and	-	확정	부과방식 ^b	공공
	우루과이(1996), 코스타리카(2001), 에콰도르(2004, 미이행)	사적	확정		완전적립	공공+민간

* 자료 : Mesa-Lago(2004: 59). 미 이행 국가는 필자 수정. 이재훈(2005)에서 재인용.

a: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는 민간+공공혼합 b: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은 CIP방식.

- 연금민영화에 따라, 노동자는 반드시 AFP를 선택해 자신의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가입해야 했음. AFP는 기여징수, 관리 및 투자운용, 연금지급 등 전반을 관장함. 노동자는 임금소득의 10%를 보험료로 개인계정에 납부해야 함. 노동자의 연금급여는 자신이 납부해 적립한 연금 기금과 기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해 얻은 수익률, 기대수명, 그리고 퇴직프로그램(퇴직시점 및 인출계획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또한 별도의 고정수수료와 관리비가 공제됐으며, 장애나 유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음. 반면, 군인과 경찰은 적용에서 기존 공적연금을 그대로 유지했고 자영업자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음.

○ 경험적으로 증명된 연금민영화의 문제들

- 칠레의 연금개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초창기 연금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론적이거나, 이념형에 따른 논쟁이었음. 그러나 민영화 이후 20년 이상 제도가 운영되면서 연금민영화의 실패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됐음. 연금민영화 찬성론자의 주장처럼 경쟁을 통한 효율, 개인의 선택권 보장, 투자수익을 통한 적절한 급여보장, 가입동기를 통한 기여회피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오히려 관리위험, 투자위험, 시장위험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 칠레 민영연금의 사용자의 기여가 폐지됐고, 세대나 성별, 소득수준에 따른 ‘연대’의 기제가 없으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함.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제 기여자 비중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배

27) 대체형은 기존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완전 폐지하고 민영연금과 대체된 것을 말하고, 병렬형(또는 선택형)은 민간연금이 도입돼 기존 공적연금과 경쟁하는 유형(가입자가 선택), 혼합형은 국가가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2층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혼합된 보충연금 형태를 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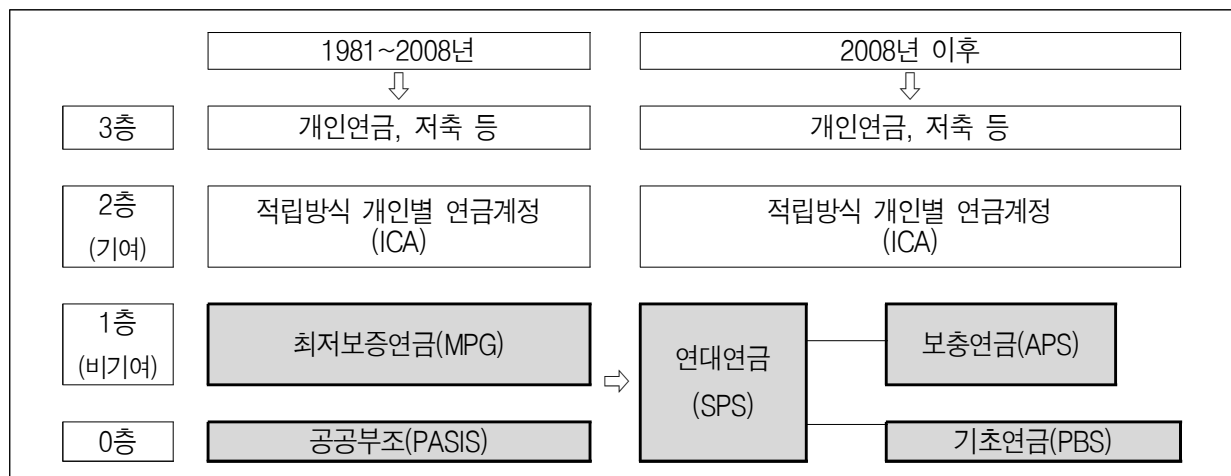
제되고 있음. 또한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른 급여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수수료 역시 큰 문제로 부상됐음.

2) 2008년 연금 개혁 : 연대연금 도입과 민영연금 관리강화

○ 2008년 바첼레트 대통령의 민영연금 개혁

- 바첼레트 대통령은 2006년 집권 6일 만에 민영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분야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연금자문위원회(일명 마르셀 위원회)’를 설치함. 이 위원회는 3개월 동안 노동조합이나 사회단체, 기업, 대학이나 해외 기관 등 73개 단체의 242명으로부터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제안을 청취했음.
- 위원회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기존 민영연금이 ‘낮은 적용범위와 급여율, 높은 수수료 부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적용범위 확대와 적정수준 연금지급, AFP의 시장실패 문제개혁 및 경쟁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Mesa-Lago 2009; Iglesias-Palau 2009). 이에 따라 2007년 마련된 개혁 법안(법률 20.255)이 2008년 1월 국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됐음.

[그림-34]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한 칠레 연금체계의 변화



(1) 연대연금(SPS)의 도입

- 2008년 연금개혁의 핵심은 연대연금(SPS)을 도입한 것임. 기존 최저보증연금(MPG)과 공공부조(PASIS)는 연대연금으로 통합됐는데²⁸⁾, 무기여 방식의 기초연대연금(*PBS: Pension Basica*

28) 최저보증연금(MP; Minimum pension Guarantees)은 연금급여가 최저액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보완해주는 제도이나, 최저보증수준은 물가연동이 되지 않았고(정부가 결정), 사적연금 가입자는 최소 20년 이상 기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입자 소득이 최저연금 이하여야 하는 등 지급요건이 매우 까다로웠음.

Solidaria, 이하 기초연금)과 보충연금 형태의 연대연금기여(*APS: Aporte Previsional Solidario*)으로 구성됨.

- 먼저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칠레에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하위 40%에게 매월 137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됐음. 그리고 이후 점차 대상과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부터 60%에게 172달러를 지급함. 기준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의해 자동 조정됐으며, 전액 국고(조세)로 지원됨.
- 보충연금인 APS는 기존 최저보증연금을 대체해 신설한 제도로 개인별 투자계정 급여가 일정수준(2008년 161달러로 시작해 2012년 586달러로 확대)이하일 때, 보충적인 급여를 제공해주는 제도임.
- 2016년 9월 기준, 연대연금의 전체 수급자 수는 약 136만 명이며(PBS 580,501명, APS 779,399명), 월 전체지출액은 약 1,806억원 수준임(2016년 11월 환율 기준).

[표-27] 칠레 연대연금(PBS와 APS)의 수급자 및 월 지출액 (2009년과 2016년 비교, 단위 : 명, 페소)

성별	제도	2009년 9월 기준		2016년 9월 기준	
		수급자	월 지출액(페소)	수급자	월 지출액(페소)
남성	PBS (노령연금)	117,430	8,940,979,460	108,480	10,238,296,402
	PBS (장애연금)	87,678	6,954,455,001	75,770	7,234,726,113
	APS (노령연금)	15,010	989,777,643	300,890	18,029,193,178
	APS (장애연금)	2,203	186,413,223	29,305	2,573,433,933
여성	PBS (노령연금)	267,244	21,089,928,935	290,590	27,343,619,532
	PBS (장애연금)	118,761	9,885,217,799	105,661	10,176,862,099
	APS (노령연금)	12,193	957,691,029	413,826	25,033,986,456
	APS (장애연금)	2,777	240,836,118	35,378	3,175,030,485
소계	PBS (노령연금)	384,674	30,030,908,395	399,070	37,581,915,934
	PBS (장애연금)	206,439	16,839,672,800	181,431	17,411,588,212
	APS (노령연금)	27,203	1,947,468,672	714,716	43,063,179,634
	APS (장애연금)	4,980	427,249,341	64,683	5,748,464,418
전체		623,296	49,245,299,208	1,359,900	103,805,148,198

* 자료 : *Superintendencia de Pensiones*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SPS에 유족연금은 없음.

(2) 가입대상 확대

- 현행 민영연금에서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운데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 노동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했음²⁹⁾.
- 18세에서 35세 미만의 청년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150%미만에 해당할 경우, 24개월 동안 개인별 연금계정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SPTJ)를 도입해 가입유인을 높이고자 했음³⁰⁾.
- 또한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경력단절이 긴 여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음. 자녀수에 따라 18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Credit) 도입, 남성에게도 유족연금 지급, 이혼 시

29) 2012년 과세소득의 40%로 시작해 2013년 70%, 2015년부터 100% 적용해 의무가입이 이뤄졌으며, 최대, 최저기여율은 노동자의 임금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됨.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옥금, “칠레 개인연금계정의 청년층 보험료 지원제도 내용과 시사점”(2016. 9)을 참고하길 바람.

혼인기간 납부 보험료에 대한 배우자 연금액의 50%를 보장하는 분할연금 등의 조치가 포함됨.

(3) AFP에 대한 관리강화

- 2008년 같은 해, 아르헨티나가 기존 민영연금을 폐지하고 ‘재공영화’ 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한 반면, 칠레는 2층의 민영연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음. 그러나 AFP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했음.
- 대신, AFP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했음. 2년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출한 보험사에 사업자격을 부여했음. 수수료 구조를 단일화해 가격비교를 용이케 했음. 또한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가입자의 참여, 정보와 교육을 강화하고자 했음.

[표-28] 2008년 칠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

주제	개혁	내용
<1층> 빈곤예방	연대연금제도 창설 (PBS+APS)	- 소득하위 60% 중 무연금 노인에게 PBS 지급 - 저연금 노인을 위한 보충연금(APS) 지급
<2층> 개인투자계정 적용범위 및 적절성	자영업 노동자 의무적용	- 자영업 노동자에 대한 당연 가입 적용
	저임금 청년노동자 보험료 지원	- 18-35세 사이의 저임금 청년노동자에게 24개월 간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
	여성을 위한 추가 기여	- 장애와 유족연금에 대해 동일 수수료가 부과되나 남녀 간 위험률 차이 존재. 차액을 여성계좌에 지원
<3층> 세제혜택 등을 통한 가입유인	단체개인연금 법적 토대	- 일정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여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 제공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세제혜택	- 기여 또는 수급 시기의 면세 허용 - 개인 또는 단체로 임의 기여한 저소득 개인에게 정부가 보너스(15%)지급
젠더 형평성	출산 크레딧	- 자녀수에 따라 18개월 가입기간 인정
	이혼 및 재혼 시 분할연금 지급	- 혼인기간 납부금의 최대 50%까지 지급.
	남성과 여성의 형평성	- 부인을 잃은 남편에게도 유족연금 지급 - 유족 및 장애연금 보험에 대한 남녀 분리 계약가능
AFP 경쟁력 강화	AFP 공개입찰 수수료 인하 유도	- 매 2년 마다 AFP 공개입찰하며,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출한 AFP에게 자격 부여(24개월 간). 이 수수료는 모든 AFP에 적용.
	AFP 기능 분산 (아웃소싱)	- AFP 기능 대부분의 아웃소싱 허용하고, 아웃소싱 했을 경우 역진적 과세 폐지.
	장애와 유족보험 분리	- 모든 AFP는 장애와 유족보험에 대한 입찰과정 진행
	수수료구조 단일화	- 고정수수료만 허용하고, 가격비교 용이케 함.
투자체계	투자 제한 유연화	- 기존 주요 구조적 제한은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 2차 규제는 투자기술 위원회 신설규정. - 이런 규제완화는 AFP의 더 큰 책임감을 동반하는 것으로, 투자와 이해관계 갈등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정책 명문화.
	해외투자비용 상한 상향	- 연기금 자산가치의 최대 80%까지 증가
참여, 정보와 교육	AFP 가입자위원회 구성	- 노동자 및 퇴직자의 대표들이 평가와 개선방향 제안
	연금교육기금 창설 등	- 정부지원과 민간기부로 자원 조성. 교육, 캠페인 등

* 자료 : Rafael Rofman, E. Fajnylber and G. Herrera(2008 : 34~36)에서 재정리.

3.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들

○ 급여의 적절성 문제 : 낮은 급여, 소득과 성별에 따른 불평등

- 2008년 연금개혁으로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낮은 급여수준과 적용범위, 불평등한 급여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됐음.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민영연금 제도 자체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임(Fabio Bertranou 2016 :7).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급여의 적절성, 즉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었음.
- 실제 2007~2014년 동안 모든 연금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34%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median 기준). 그나마 국가에 의한 공적급여인 보충연금(APS)에 의해 전체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45%까지 증가하며, 여성도 24%에서 31%로 7%p 증가했음.

[표-29] 실제 소득대체율(2007~2014년)과 전망(2025~2035년), 단위(%), 중위값 기준.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실제 소득대체율 (2007-2014)	민영연금(개인저축계좌)	34	48	24
	민영연금 + 공적급여(APS)	45	60	31
소득대체율 전망 (2025-2035)	민영연금(개인저축계좌)	15.3	24.7	8.3
	민영연금 + 공적급여(APS)	37.2	41	34.1

* 자료 : CAPSP(2015) 자료. Mesa-Lago and Bertranou(2016) 재인용.

- 이 기간 동안 퇴직자가 매달 받는 연금급여는 82,650페소로 약 15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받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의 40% 수준임. 같은 기간 여성은 42,561페소(약 65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남성의 연금급여가 112,333페소(171달러)의 38%밖에 되지 않음.
- 이는 향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2025년부터 2035년 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15.3%에 불과하며, 여성은 단지 8.3%수준으로 나타남. 즉, 민영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은 매우 낮으며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공적급여를 통해 어느 정도 소득대체율을 만회하긴 하나, 여전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OECD 국가의 평균 순(net)소득대체율과 비교해보면, 다음 [표-5]와 같이 큰 격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모든 소득구간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OECD국가 평균(칠레 제외)에 비해 순소득대체율은 훨씬 더 낮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칠레의 연금급여액은 전체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의 연금을 받으며(남성 85%, 여성 72%), 44%의 연금급여는 빈곤선 이하에 해당되는 수준임(남성 26%, 여성 59%)³¹⁾.

[표-30] OECD국가의 평균 순 소득대체율 및 칠레와의 격차(%p)

구분	OECD				칠레 (OECD와의 격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비중	소득대체율	비중	소득대체율		
25% 이하	13.60%	30.90%	13.30%	30.90%	- 10.8	- 11.3
26 ~ 50%	35.20%	38.50%	35%	38.90%	- 12.9	- 15.0
51 ~ 75%	67.6%	52.10%	67.50%	51.70%	- 16.4	- 22.8
75% 초과	89.20%	61.50%	89.20%	61%	- 17.8	- 26.3
소계	100%	66.10%	100%	65.60%	- 17.9	- 27.7

* 자료 : OECD(2015). COMISIÓN ASESORA PRESIDENCIAL(2015: 92).

○ 낮은 적용율과 광범위한 기여회피

- 2008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대상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³²⁾, 자영업 노동자의 의무가입이 확대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 등은 여전히 의무가입대상이 아님.
- 민영연금의 전체 가입자 수는 2016년 8월 기준 1천명이 넘으며(1천 13만 8,374명), 이는 경제활동인구(15~64세) 대비 약 84.4%에 이르는 수준임.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기여자 수는 절반 수준인 55.3%에 불과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기여회피를 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질 적용률은 46.7%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31] AFP별 가입자 및 기여자,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백만 페소)

구분	가입자 수(a)	기여자 수(b)	노령 연금 수급자 수	가입 대비 기여 (b/a*100)	AFT별 가입자 점유율	연기금 (백만 페소)
CAPITAL	1,723,796	986,904	300,438	57.3	17.0	22,770,190
CUPRUM	634,155	480,754	108,808	75.8	6.3	24,171,612
HABITAT	2,035,912	1,215,199	287,978	59.7	20.0	31,067,710
MODELO	1,482,576	698,617	69,358	47.1	14.6	3,266,586
PLANVITAL	1,062,640	538,545	91,877	50.7	10.5	3,862,023
PROVIDA	3,199,295	1,688,247	503,499	52.8	31.6	31,109,365
TOTAL	10,138,374	5,608,266	1,361,958	55.3	100.0	116,247,486

* 자료 : 2016년 8월 기준임(연기금 적립규모는 9월 기준). Superintendencia de Pensiones 통계자료에서 재구성(굵은 선 부분은 필자 추가).

31) Comisión presidencial Pensiones(2015: 92~93).

32) 2006년 연금적용률은 79%였으나 2008년 개혁 이후 84%까지 확대됐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74%에서 84%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SPS 도입의 결과임.

○ AFP의 집중화 및 관리수수료 문제

- 칠레는 민영화 초기 12개의 AFP로 시작해 1994년 22개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폐업 및 인수·합병 등으로 집중화 현상이 심해졌으며 2016년 11월 현재 Cuprum, HABITAT, Modelo, Provida, PlanVital 등 6개의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음. Diamond and Valdes-Prieto(1994: 288)는 이러한 집중화가 경쟁시장이라기 보다 독점경쟁시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함. 위의 [표-7]에서 보듯이, 실제 PROVIDA와 HABITAT 2개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51.6%),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하고 있음.
- 형성된 독점경쟁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차별화의 전략을 위해 경품, 판매원들의 수당(인센티브), 높은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관리운영비의 부담을 증가시켰음. 심지어 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관리회사들의 평균이윤율은 높게 나타났음(이재훈, 2004)
- AFP의 총 수익률이 곧 개인계정의 수익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 중개수수료나 고정수수료 등을 감안해야함.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였던 8~90년대에 비해 최대 1/3 수준까지 낮아졌으며³³⁾, 이조차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다양한 투자위험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한 상태임.

[표-32] AFP별 고정 수수료 (2016년 11월 현재)

구분	CAPITAL	CUPRUM	HABITAT	MODELO	PLANVITAL	PROVIDA
2008년	2.64%	2.65%	2.41%	-	2.99%	2.59%
2016년	1.44%	1.48%	1.27%	0.77%	0.41%	1.54%

* MODELO는 2010년 7월부터 AFP로 등록해 2008년 이전 자료는 없음. *자료 : *Superintendencia de Pensiones* 통계.

[표-33] AFP별 펀드 유형 및 기간별 실질 수익률 (단위 : %, 2016년 9월 기준)

구분	2015년 10월 ~ 2016년 9월					2013년 10월 ~ 2016년 9월				
	A	B	C	D	E	A	B	C	D	E
CAPITAL	-1.79	0.50	1.58	2.63	3.69	3.85	3.95	4.40	4.24	3.98
CUPRUM	-1.67	0.41	1.46	2.44	3.22	4.23	4.28	4.85	4.79	4.40
HABITAT	-1.10	1.11	2.14	3.02	3.73	4.26	4.35	4.99	4.82	4.15
MODELO	-0.80	1.20	2.01	2.88	3.42	4.00	4.03	4.30	4.30	3.62
PLANVITAL	-2.53	-0.57	0.91	2.19	3.18	3.25	3.29	3.74	3.96	6.40
PROVIDA	-1.63	0.28	1.14	2.21	3.03	3.88	3.92	4.29	4.22	3.73
평균 수익률	-1.54	0.60	1.56	2.55	3.43	4.05	4.09	4.59	4.46	3.97

* 자료 : *Superintendencia de Pensiones* 통계자료에서 재구성.

* A펀드가 위험투자비중이 가장 높으며(최소 40%~최대 80%까지), E펀드 유형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임

33) 칠레 연금의 수익률은 1980년대 12.3%였으나 1990년대 10.4%, 2000년대 6.3%에 이어 2010년에는 4.3%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음. 실제 2007년 12월과 2008년 12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연금을 민영화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연금 자산가치가 약 8~50%까지 손실을 입었을 정도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함 (Dorfman, Hinz, and Robalino, 2008).

4. 두 번째 개혁과 두 가지 제안

1) 2015년 바첼레트 대통령의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 바첼레트 대통령의 재선과 연금개혁 공약

- 바첼레트 대통령에 이어, 2010년 1월 대선에서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nera*)’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군부독재 이후 20년 만에 다시 우파가 집권하게 됨. 그는 군부독재 당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며 연금민영화를 주도한 ‘호세 피네라(*Jose Pinera*)’의 동생이기도 함.
- 그리고 2013년 11월 대선에서 사회당이 중심이 된 중도좌파정당의 선거연합체인 ‘새로운 다수(*Nueva Mayoría*)’³⁴⁾의 후보로 바첼레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민영연금에 대한 개혁이 추진됨. 선거운동 당시, 바첼레트 후보는 집권 초기 100일 동안 수행할 50개의 핵심공약을 발표했는데, 교육, 건강, 사회보장, 연금, 노동, 시민안전, 지방분권, 도시개발, 환경, 문화 등임. 이 가운데 연금개혁 공약은 기초연금(PBS) 강화와 국가가 운영하는 AFP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임(*Michelle Bachelet* 2013 : 11).

○ 연금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대통령자문위원회’ 구성

- 지난 2008년 개혁 당시와 마찬가지로, 2014년 4월 29일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약에 따라 ‘대통령자문위원회’(일명 ‘브라보 위원회’)가 구성됨. 위원회는 24명(국내 15명, 국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는데,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수급자 및 퇴직자단체, 정부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뿐 아니라 AFP, 국제조직 등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설문조사나 지역공청회,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음.
- 위원회는 현행 연금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께, 더 나은 연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으나,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남. 투표를 통해 과반이 넘는 58개에 이르는 개혁제안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됐으나, 가장 핵심이자 쟁점이 됐던 것은 2층의 민영연금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음. 연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방안(A, B, C안)이 제안됐음.
- 이 중 하나는 현행 민영연금을 기존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인데(C안), 이는 시민참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위원 중에서는 한명의 지지만을 얻음. C안에 대한 반대 사유로는 ▷기존 개인계좌별 적립금을 부과방식으로의 편입하는 문제, ▷과도한 기여와 조세 인상, ▷저축과 투자 감소, ▷기여율 인상이나 인구고령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가정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 등이 제시됐음.

34) ‘새로운 다수’(Nueva Mayoría)는 2006년 대선 당시 ‘민주주의를위한정당연합’(SPD)에 속해있던 사회당(PS), 기독교민주당(PDC), 급진사회민주당(PSD), 민주주의당(PPD)에 2013년 칠레공산당(PCCh), 좌파시민당(IC), 사회운동당(MAS)이 추가로 가세해 만들어진 정치연합체임(en.wikipedia.org, 방문일 2016. 11. 3).

2) 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제안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vs 사회보험 요소 도입

(1) A안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 위원회 24명 가운데, 12명의 지지를 받은 A안은 현행 연금체계 내에서 낮은 급여와 대상범위, 성 불평등, AFP의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문제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며, 핵심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연대연금은 기초연금(PBS)과 보충연금(APS)을 하나의 보편적 연대연금으로 합치고, 현행 60%인 대상범위를 최소 80%까지 확대하는 것임. 재원은 사용자 기여의 2% 부과 및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함. 2층의 민영연금은 개인계정에 사용자 기여 2%를 부과하는 것과 국가가 운영하는 AFP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임. ‘국가 AFP’는 기존의 다른 AFP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진입장벽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저임금 계층의 가입을 확대하고, 낮은 수수료를 통해 AFP들 간의 경쟁 촉진 등을 달성하겠다는 것임.
- 이밖에, 젠더 형평성 향상을 위해 남성(65세)과 여성(60세)의 법적 수급연령을 65세로 단일하게 하되, 수급연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남녀 공용의 사망표(unisex mortality tables)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2) B안 : 공적보험 요소 도입을 통한 ‘대체형’에서 ‘혼합형’ 모델로의 전환

- 위원회 24명 가운데, 11명의 지지를 받은 B안은 현행 연대연금제도 내에서 기초연금 이외 사회보험 요소를 도입해 혼합형 체계로 변경하는 것임(앞의 [표-2]의 대체형 → 혼합형).

[표-34] 혼합형 연금체계(mixed pension system)의 급여, 재원, 관리

구분		비기여	기여	
			사회보험	완전적립 개인계정
급여	무기여	PBS (<i>Pensión Básica Solidaria</i>)	-	-
	중간소득(35만 페소) 이하의 노동자	PBS	PSS (<i>Pensión Seguro Social</i>)	-
	중간소득(35만 페소) 초과 노동자	PBS (상위 20% 제외)	PSS	PCI
재원		일반세	노동자와 사용자의 기여 일반세를 통한 정부기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기여
관리		사회보장 관리 (<i>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i>)	사회보장 관리 (<i>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i>)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 관리 (<i>Instituto de Previsión Social</i>) AFPs와 보험사

* 자료 : Fabio Bertranou(2016 : 15).

- 2008년 개혁을 통해 대상 확대 및 빈곤경감이라는 긍정적 진전을 이루긴 했으나, 여전히 연대 결여와 낮은 급여, 높은 수수료, 사용자의 기여부족 등의 문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연대와 재분배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먼저 현행 기초연금(PBS)은 조세를 재원으로 기여능력이 없는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대상범위를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상위 20% 제외). 특히 2층 기여부분에서 일종의 명목계좌 형태인 사회보험(PSS)을 신설하는데, 일정 기준소득(중위소득 상한 35만 페소) 이하인 경우는 민영연금이 아닌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됨. 또한 A안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기여를 점진적으로 4%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A안이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2%씩 할당하는 것과 달리, 신설된 사회보험에 할당함.
- 즉 중위소득 일정 수준이하인 경우, 민영연금이 아닌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돼 기초연금과 신설된 사회보험 급여를 본인과 사용자, 그리고 일반세를 통한 정부의 기여를 통해 지급받게 됨. 이 안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민영연금의 과도한 위험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Christian Larraín, Andras Uthoff의 계산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사회보험을 통해 최저임금의 약 70%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Bertranou, 2016 : 10).

3) 바첼레트 정부의 선택과 국민의 요구

○ 바첼레트 대통령의 선택 : 사용자의 기여율 5% 도입과 국가 AFP 신설

- 지난 8월 민영연금을 폐지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행진 이후, 바첼레트 대통령은 연금민영화 당시 폐지됐던 사용자의 기여율 5%를 도입해(현행 10%→15%)까지 상향하는 한편, 국가 AFP를 신설하는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Silvia Borzutzky와 Mark Hyde(2016 :67)에 따르면, 2008년 연금개혁이 우파 정당들과 AFP들의 반대에 의해 중요한 권고사항들이 법제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 개혁방안 역시 2층 민영연금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AFP들은 정부방안에 안도하는 분위기임. AFP협회장인 로드리고 페레스(Rodrigo Pérez)는 점진적 기여율 상향, 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인센티브, 기초연금 강화 등 정부의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임의저축제도와 대체투자, 역모기지, 가입자 연금교육 등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함³⁵⁾. 반면, 부과방식의 공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며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영연금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연금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El Mercurio* 2016. 11. 7).
- 사용자단체는 사용자의 기여금 상향이 결국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하지만 OECD(34개국 기준) 가운데 공적연금(사회보험)과 의무 사적연금에 대한 평균 사용자의 기

35) AFP 등 각 단체의 자세한 연금개혁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Antecedentes del Informe Final*) 가운데, VOL 1(*Audiencias Publicas : Documentos Complementarios*)을 참고하길 바람.

여율은 12.27%이며, 노동자 기여율은 7.7%임(OECD 2015에서 재구성). 칠레가 사용자 기여율 5%를 도입하더라도 한국(4.5%), 캐나다(4.95%)에 이어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특히 10년에 걸쳐 0.5%씩 단계적 상향까지 논의되고 있고, 현재 칠레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인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움.

○ 국민의 반응과 요구 : No más AFP ni privada, ni estatal!

- 많은 국민들은 “민간(시장)이든, 국가든 더 이상 민영연금은 필요 없다(*No más AFP, ni privada ni estatal*)”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³⁶⁾.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를 신설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임.
- ‘민영연금 반대운동’은 현재 민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아니며, 또한 ‘민영화 이전(1981) 공적연금으로의 단순한 회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님³⁷⁾. 급여에 대한 사회적 권리, 재정과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리가 강화된 새로운 국민연금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의 공동 기여(노동자 10%, 국가 10%, 사용자 20%)를 통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의미함³⁸⁾.
- 총파업 이후 ‘민영연금 반대운동’ 단체는 법 개정 요구와 함께, 현재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AFP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포트폴리오 역시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펀드E’로 전환하는 캠페인 또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5.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정리

- 칠레는 1981년 세계 최초로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 연금으로 전면 대체하는 연금민영화를 추진했음. 칠레의 연금민영화는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연금개혁의 모범적인 사례로 칭송하면서 90년대와 2000년 초반까지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음.
- 그러나 연금민영화 이후 20년이 넘어가면서, 이론적으로 비판받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현실로

36)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조사한 설문결과(2015)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현재의 AFP체계를 인정할 수 없고,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66%가 현재의 낮은 연금급여 문제 역시 AFP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37) 이전 칠레의 공적연금은 직업에 따라 다양하게 계층화된 분절적인 제도였으며, 비효율적인 연금운영, 기여와 급여 간 불합리 등으로 매우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음.

38) ‘NO mas AFP’의 주요 입장과 요구는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와 지난 8월 31일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공식 대변인(*Luis Mesina*)의 언론인터뷰, 공식홈페이지 등에서 살펴볼 수 있음.

드러나기 시작했음. 사용자 기여의 폐지와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인한 낮은 투자 성과로 연금급여는 매우 낮았음. 특히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가입자는 투자손실액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높은 관리비와 수수료 인해 부담이 증가했음. 특히 성별·계층별·세대 간 연대의 기제가 사라지면서 여성, 저임금·저소득 계층일수록 더욱 연금급여가 낮은 불평등 문제도 심화됐고, 기여회피에 따른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음. 또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민영화에 따른 제도이행 비용과 민영연금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투입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수밖에 없었음.

- 2008년 바첼레트 대통령은 민영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단행했으나, 기존 민영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신설·확대하고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했음. 기초연금 도입 효과로 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났지만, 민영연금의 폐단을 극복하거나 빈곤해소를 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음.
- 2014년 재선한 바첼레트 대통령은 다시 연금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했는데, 현행 체계 내에서 국가AFP를 만들어 기존 민영보험사들과 경쟁하는 방안과 새로 공적 사회보험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 바첼레트 정부는 이 가운데, 사용자의 기여를 5%로 새로 도입하는 한편, 국가 AFP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그러나 칠레 국민들은 민영연금은 폐지하고, 정부와 사용자의 기여를 추가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저항을 계속하고 있음.
- 칠레의 연금개혁은 아직 진행 중임. 지난 2008년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지, 아니면 기존 아르헨티나(2008년)나 헝가리(2014년)³⁹⁾와 같이 민영연금을 폐지하는 개혁까지 이어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민영연금을 개혁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높게 형성돼 있으며, 연금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임.

2)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연금 민영화)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1) 우리나라는 칠레와 같이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극단적인 방식의 연금민영화가 추진된 적은 없으나, 여전히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기조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

39) 헝가리의 민영연금(법정 민간연금제도)의 도입과 폐지 과정에 대한 내용은 민기채(2016: 44~51)을 참고하기 바람.

고 있음. 2000년대 초반 들어, 세계적으로 연금민영화 추세가 주춤해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칠레를 비롯해 연금 민영화를 추진했던 국가들이 다시 사적연금을 축소·폐지하거나, 공적연금을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었음.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역시 이러한 ‘역전 현상’에 주목하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음. 사적연금 활성화는 공적연금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적연금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할 수 있음.

- (2)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2009년 칠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2005년 미국에서 칠레의 연금체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유행했다. 하지만 신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모델을 지니고 있다.”며(Lanación 2009), 칠레의 연금체계를 비판했음. 칠레 사례를 통해 민영연금을 다시 개혁하는 과정은 정치적 의지나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이미 형성된 제도와 시장의 힘을 극복해야 하는 복잡하고 힘든 정치적 과정’을 동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감정적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 이를 더욱 축소하려는 정치적 압박 또한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신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3) 칠레는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유사한 연대연금제도를 도입되면서, 노인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고, 대상도 확대해가는 등 많은 효과를 이뤘음. 그러나 이런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영연금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함.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극심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화될 노후 문제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음.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하는 투 트랙 강화전략⁴⁰⁾은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님.

40)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가 낮아지고(기준연금액 초과할 경우, 최대 부가연금액 수준만 지급), 소비자물가연동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갈수록 실질 급여수준이 낮아지는 방식임. 국민연금 역시 낮은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니고 있음.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데,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노후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연금체계(기초연금과 국민연금)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재원에 대한 사회적 분담 구조(국가의 조세와 보험료 지원,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를 통해 이뤄짐.

참고자료

- 민기채. 2016. “헝가리의 법정 민간연금제도의 도입과 폐지에 관한 고찰”, 국민연금연구원, 연금 포럼, 2016. 가을호 vol. 63.
- 이재훈. 2005. 1. “연금민영화 비판 : 라틴아메리카 연금민영화의 교훈”, 중앙논단 23집.
- _____. 2016. 2. “연금민영화 사례분석을 통한 비판적 평가 :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옥금. 2016. “칠레 개인연금계정의 청년층 보험료 지원제도 내용과 시사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 제34호.
- Bonnefoy, Pascale. 2016. “With Pensions Like This (\$315), Chileans Wonder How They’ll Ever Retire,” New York Times(2016. 9. 11).
- Carlos Arze Vargas. 2016. “Administración Del Ahorro Previsional: Ganancias empresariales vs. pérdidas laborales”, Unidad de Comunicación y Gestión de Información(CEDLA)
- Comisión presidencial Pensiones. 2015. “Informe Final Comisión Asesora Presidencial sobre el Sistema de Pensiones” 2015. 9.
-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NO+ AFP. 2016. “Propuesta a entregada Presidenta Bachelet”, (2016. 8. 31).
- Dorfman Mark, Hinz Richard, Robalino David. 2008. “The Financial Crisis and Mandatory Pens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 Short-and Medium-Term Responses for Retirement Income Systems”, World Bank Pension Reform Primer Series. 2008.
- El Mercurio. 2014. “Propuestas de la CPC y la Asociación de AFPs a la Comisión Bravo insisten en necesidad de mayor contribución”(2014, 6. 24).
- _____. 2016. “Su verdadero interés es político, hacer daño, y no mejorar las pensiones”, (2016. 11. 7).
- Fabio Bertranou. 2016. “Pension benefits in Chile: is it possible to improve adequacy and solidarity?”, Assessing the effects of labor market reforms – a global perspective, A joint ILO/IZA Conference in partnership with leading G20 think tanks ILO headquarters, Geneva, Switzerland. 2016. 3.
- Gligorevic Tihomir. 2016. “Chile: 600,000 March in Santiago Against Pinochet – Era Pensions System,” InSerbia Network Foundation(2016. 8. 26).
- Lanación. 2009. “Krugman critica sistema de pensiones chileno”(2009. 10. 29)
- Mesa-Lago. 2004. “Myth and Reality of Pension Reform: The Latin American Evidence”, World Development Vol. 30, No. 8, pp. 1309-1321.
- Michelle Bachelet. 2013. “50 Compromisos para mejorar la calidad de vida en el Chile de todos : 100 primeros días de Gobierno”, 2013. 9.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3 :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2015.

Silvia Borzutzky, Mark Hyde. 2016. “Chile’s private pension system at 35: impact and less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Social Policy, 2016 Vol. 32, No.1 57-73.

Superintendencia de pensiones. 2016. “INFORME : Valor y Rentabilidad de los Fondos de Pensiones”, 2016. 10.

홈페이지

No+ AFP단체 <http://www.nomasafp.cl/inicio/>, <https://www.facebook.com/nomasafp/>

칠레노총(CUT) <http://www.cut.cl>

칠레 연금감독기구(SP) <http://www.spensiones.cl/>

칠레 연금제도 대통령자문위원회 <http://www.comision-pensiones.cl>

위키피디아 [https://es.wikipedia.org/wiki/Nueva_Mayor%C3%ADa_\(Chile\)](https://es.wikipedia.org/wiki/Nueva_Mayor%C3%ADa_(Chile))

○ 2016.12.22.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개선 방향 이슈페이퍼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2016. 12. 22.

< 요약 >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

1.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직접적 지배력 강화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역할(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2. 국민연금 합병찬성에 대한 의혹 → 손해액 보다 더 중요한 손해는 국민연금 신뢰훼손.

1)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ISS, 글라스 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합병반대 권고, 기금 운용본부 내부 검토에서도 손해발생 인지. 합병이후에도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속.
-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대?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 그러나 시너지효과는 불확실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만 의존해 판단(시너지효과 과장됐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

2)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위

- 서울고등법원,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존재한다고 판단.
- 국민연금은 합병공시 직전 다수주식 매도, 합병공시 직후부터 주주명부 폐쇄까지 다시 매수하는 비정상적인 투자행위에 주가하락 공모 등 의혹.

3)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 SK와 SK C&C 합병 과정과 유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안전을 부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합병찬성 결정.

3.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100조원 돌파. 5% 이상 지분을 보유기업은 290개 → 재발방지 뿐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개편 필요.

-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 차지.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 차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기업.

< 요약 >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은 최소화하고, 가입자의 권한 강화

- 대리인은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 받은 것.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 개편

-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개별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권한 부여(3인 이상 요구 시)
-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변경(정부 영향력 최소화)
 - 총 9인은 그대로 유지(정부추천 2인→1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 추천(2인) 및 연구기관 추천(1인)은 국회 여야동수 각 2인 추천으로 변경).
-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결권행사전문위원 중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 등 겸직. 위원 선임 과정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뿐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에게 준하는 형태의 행위준칙 적용 필요.
-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및 법적 기구로 전환.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① 의결권의 강화 및 주주권으로의 확대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으로의 확대 필요

② 사회적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책임투자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행사지침에도 없음.
-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 및 강화 필요.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강화 -

이 재 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합병에 찬성하면서 이를 둘러싼 많은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청와대와 최순실, 그리고 삼성 등 재벌간 불법커넥션과 연루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결정과정이 얼마나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취약한 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음.

이 보고서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의혹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국민연금이 정치권과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충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자 함.

1. 들어가며

○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삼성 등 재벌

- 최순실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등 재벌 간의 거대한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 이승철(전경련 부회장) 등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를 대가로 ‘노동개악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각종 친자본 법안과 규제완화를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확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롯데와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특혜 등 각종 부정한 청탁에 연루됐다는 것임.
- 이미 검찰은 각종 비리와 특혜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지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음.

○ 국민연금의 불법커넥션 연루 의혹

-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삼성과 청와대의 교감 하에 국민연금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합병 주주총회 당시(2015년 7월 17일),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1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해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했을 경우 합병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사실상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나아가 (합병)삼성물산⁴¹⁾을 통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던 것임.
- 당시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낮게 책정돼 있어(1:0.35), 합병 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많은 전문기관들이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는 주총을 불과 1주일 남긴 상황에서, 자체 투자위원회의 표결과정을 거쳐 합병에 찬성한 것임.
- 특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직후에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고, SK와 SK C&C의 합병(2015년 6월 26일)은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반대 의결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기금운용본부 자체 표결을 통해 결정하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검찰은 당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과정에 청와대와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의 외압이나 뒷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음.

○ 1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투자.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 국민연금기금은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투자는 100조가 넘는 1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에 투자되고 있음.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만 해도 16조 4,966억이 투자되며, 전체 국내주식투자의 16.7%를 차지하고 있음.
- ‘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 간의 검은 정경유착 과정에 국민이 노후를 위해 땀 흘려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정치권력과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 이 글에서는 지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아가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41) 제일모직은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한 후, 회사명을 삼성물산으로 변경하였음. 이 글에서는 회사명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합병이전의 삼성물산은 (구)삼성물산으로, 합병 이후 제일모직이 회사명을 변경한 ‘삼성물산’은 (합병) 삼성물산으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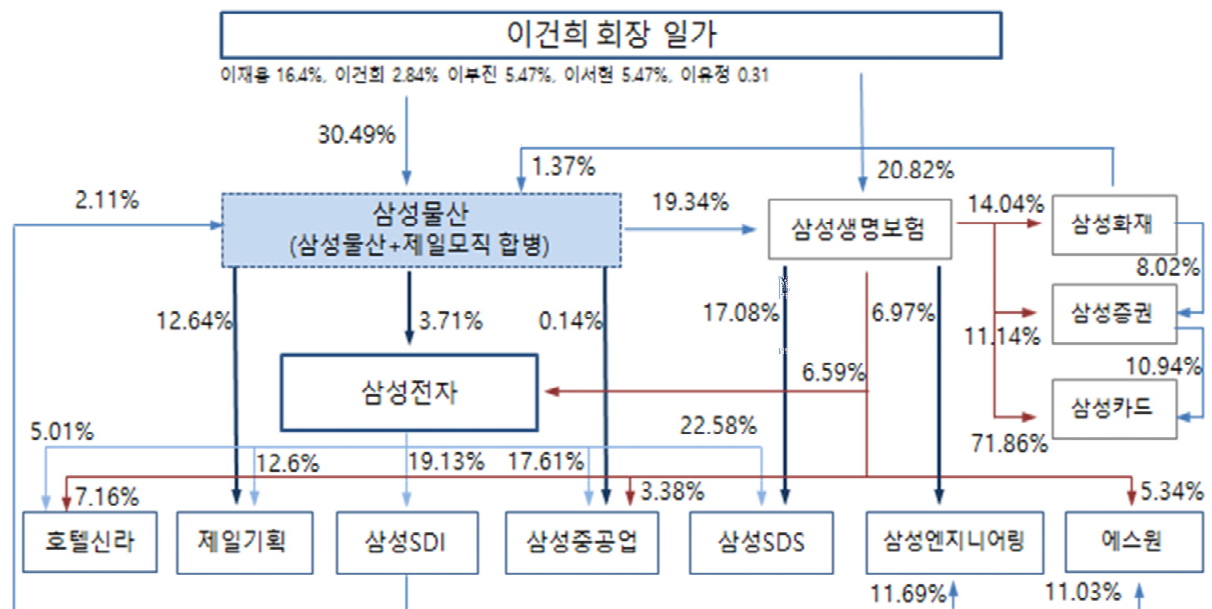
2. 국민연금 합병찬성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점

1) 삼성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중요했던 이유

○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지배력 강화

- 그동안 국내 재벌들은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해왔음. 순환출자란 흔히 한 그룹 내에서 계열사끼리 ‘A기업→B기업→C기업→A기업’ 등 고리형태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투자방식을 의미하는데, A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면 이러한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사실상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임.
-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에는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SDI→(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순환출자의 고리를 지녔음⁴²⁾. 제일모직의 상장, 그리고 (구)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구조는 ‘(합병)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생명’으로 단순한 지배구조가 형성됨.

[그림-35] 삼성그룹의 지배구조(2016년 11월 30일 그룹 내 상장기업 기준)



* 지분은 공정위, '기업집단현황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2016년 11월 30일 기준).

* 삼성그룹 내 비상장기업은 제외된 것이며, 1% 이하 지분은 생략했음.

- 제일모직은 순환출자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였고 이재용 부회장과 계열사 등 최대주주 지분이 52.4%였으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0.57%에 불과했음.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총합은 약간 줄어들지만, 30%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4.06% 지분을 확보하게 됐음.

42) 헤럴드경제(2014. 7. 17), 이투데이(2015. 7. 17), 비즈니스포스트(2014. 10. 31) 등 기사 참고.

- 즉,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보험을 양측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 것임.

○ 국민연금이 합병성사의 ‘캐스팅보트’

- 국민연금은 합병이전 삼성물산의 제1대 최대주주로 주주명부가 확정된 작년 6월11일 기준으로 삼성물산 주식 1천751만6천490주(지분율 11.21%, 시가평가액 1조2천209억), 제일모직 주식 653만5천240주(4.84%, 1조1천763억)를 보유하고 있었음⁴³⁾.
- 합병안과 같은 특별 결의안건은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2/3(66.67%)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재용 등 총수일가의 지분 13.82%, (구)삼성물산이 KCC에 처분한 자사주 5.96% 등 확실하게 찬성 입장인 지분은 20% 수준에 불과했고, 국민연금의 입장에 따라 합병성사의 향방을 가른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음.
- 실제로도 합병 당일 임시주주총회 참석률은 84.73%이고, 참석 주주 중 69.53%의 찬성률로 안건 승인율을 2.87% 간신히 넘기며 합병이 가결됐음.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합병은 무산됐을 것임.

2) 불공정한 합병비율에도 찬성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합병결의 및 합병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시된 합병비율은 “1 : 0.3500885”였음.
- 합병비율은 회사 A와 회사 B가 흡수·합병할 경우,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데,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구)삼성물산의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로 바꿔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임(제일모직 159,294원, 삼성물산 55,767원).
- 즉, 합병비율의 공정성 여부는 국민연금의 손익 뿐 아니라(합병비율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의 지분율 상승), 합병 찬반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도 함.

○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 당시 ‘1 : 0.35’의 합병비율이 낮게 평가됐다는 문제제기가 많았음. 먼저, (구)삼성물산의 7.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계 해지펀드사인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은 (구)삼성물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명백하게 불공정한’ 합병이라고 반대하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가치 합병비율은 ‘1 : 1.6’이라고 제시함⁴⁴⁾.

43) 삼성물산의 자산(26조1,556억원)은 제일모직(8조 1,833억원)보다 많지만, 현행 국내법에서는 기업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자산이 아닌 시가(기준주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4) 엘리엇이 주장한 합병비율은 ‘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된 기업가치분석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법인 내 최종 승인되지 않은 초안이었고, 인수합병 용도가 아닌 투자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 기사(2015. 6. 19) 참고.

- 국민연금을 포함해 세계 기관투자자들과 의결권 자문계약을 가장 많이 맺고 있는 ISS는 “삼성물산은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돼 삼성물산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합병 반대를 권고하고(한겨레, 2015. 7. 3), 적정 합병비율로 ‘1 : 0.9530’을 제시함⁴⁵⁾.
- 세계 2위 의결권자문사인 ‘글라스 루이스(Glass Lewis & Co)’, 국내 사회책임투자 컨설팅업체인 ‘서스틴베스트’ 역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같은 이유로 합병 반대를 권고했으며⁴⁶⁾, ‘한국기업 지배구조원(CGS)’ 또한 합병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적정 합병비율로 ‘1 : 0.43’을 제시함.
- 기금운용본부 내부 검토과정에서도 “양사의 적정 가치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을 구해보면 ‘1 : 0.4634’이며, 따라서 합병비율에 있어서는 삼성물산이 다소 불리”하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됐음⁴⁷⁾.
- 핵심은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전문기관의 반대권고가 있었고 기금운용본부 자체적으로도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낮게 산정돼 국민연금의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인지했음에도(아래 표-1 참고), 왜 국민연금이 합병비율 그대로 인정하며 합병에 찬성했는가 하는 점임.

[표-35] 합병비율에 따른 국민연금 보유평가금액 변동(억원, %)

합병비율	기금포트폴리오		합병 후			
	기금 시가평가액	합병비율 대비 손익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국민연금	
			지분율	증감	지분율	증감
0.25	19,646	-3,153	42.3	+2.4	6.2	-0.4
0.30	21,222	-1,576	41.1	+1.2	6.5	-0.2
0.35	22,799	-	39.9	-	6.7	-
0.45	25,952	+3,153	37.9	-2.0	7.0	+0.3
0.50	27,528	+4,729	37.0	-3.0	7.1	+0.5

* 자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제윤경 의원실(2016년 11월 15일) 보도 자료에서 재인용.

- 합병 이후에도,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판적 입장들이 계속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 판결에서 1주당 매수가격을 (구)삼성물산이 정한 57,234원보다 약 16.36% 높은 66,062원(합병비율 1 : 0.403)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 등은 합병비율을 ‘1 : 0.5675’로 재산정함.⁴⁸⁾
- 더 나아가, 뉴스타파는 흥순택 회계사와 함께 2015년 7월 기금운용본부가 산출한 합병비율(1 : 0.4634) 분석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면서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합병비율은 1: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라고 비판함⁴⁹⁾.

45) ISS는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제시. 합병비율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회의록(2015. 7. 10) 참고.

46)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삼성물산 저평가 여부가 합병 찬반 갈랐다”(2015년 7월 6일), 연합뉴스 (2016년 7월 8일) 등 관련 기사 참고.

47)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15년 39차 투자위원회 회의록.

48) 참여연대, 연금행동 등이 제기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청원서’(2016. 12. 1).

○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기금운용본부는 보도 설명자료(2016.11.23.)를 통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및 주식 가치의 상승 여지 등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음.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로서의 이익창출이나 신사업 진출기반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합병비율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는 삼성 측이 기업설명회를 통해 밝힌 합병 기대효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당시 삼성은 “건설/상사 등 B2B 분야에서의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 패션/식품사업의 해외 시장 확대 및 바이오 사업 등 신규 사업기회창출을 통해 2020년 매출 60조원, 세전이익 4조원을 달성한다는 성장목표를 발표했음(제일모직, 2015. 6).
- 합병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은 명확한데 반해,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미래가치는 불확실성에 기초한 삼성 측의 목표나 계획에 의한 것일 뿐, 합병 전후 재무사항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근거 및 합리적 판단 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⁵⁰⁾.

3)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과 국민연금의 매도

○ 의도적인 주가하락 의혹

- 현행 자본시장법령에는 합병 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체결 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1주일, 당일을 기준으로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즉, 매우 단기간의 주식가치와 주가변동이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
- 그런데 여러 언론 등을 통해 (구)삼성물산이 의도적인 실적 부진(신규분량 물량 축소 및 수주물량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빼돌리기 등)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해 가치를 낮췄으며, 합병 결정시기 역시 주식이 가장 낮을 때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됨. (구)삼성물산의 주식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제일모직보다 (구)삼성물산의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제일모직의 지분이 40%가 넘었던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이익은 커지게 됐음.
- 당시 국내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합병에 반대했던 보고서를 낸(2015. 7. 8)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전 사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물산의 실적을 일부러 나쁘게 해서 주가를 떨어

49)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 “국민연금, 삼성물산 ‘적정 합병 비율 1:0.46’ 도 엉터리”(2016. 12. 6) 기사 (<http://newstapa.org/36346>) 참고하기 바람.

50) 예를 들어 경제개혁연대는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며, 제일모직은 2014년 말 상장(IPO) 당시에는 바이오부문의 사업에 대해 위험이 많아 자금조달을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기재하였으나(상장을 위한 증권보고서에는 2014년 3분기말 154억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투자손익 역시 -187억 원을 인식하고 있다고 기술), 불과 6개월 후인 삼성물산과의 합병 당시에는 그 가치를 크게 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음에도, 국민연금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뜨렸다. 당시 다른 건설사들의 주가는 연초 이후 평균 30% 정도 올랐는데, 유독 삼성물산만 10% 내렸다”며 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삼성물산 이사회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승인한 것은 최악의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함.

“...삼성물산의 실적을 일부러 나쁘게 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당시 다른 건설사들의 주가는 연초 이후 평균 30% 정도 올랐는데, 유독 삼성물산만 10% 내렸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40%가 넘는 제일모직은 어떤 식으로든 합병을 유리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이사회가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승인한 것은 최악의 행위다...”(한겨레, 11/22)

- 실제로 합병 결의 직전인 5월 22일 현대건설 17.2%, GS건설 33.0%, 대우건설 31.5%, 대림산업 29.6% 등 다른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삼성물산은 오히려 8.9% 하락했음(한겨레, 2016. 6. 1).
- 이러한 의혹과 주장들에 대해,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실적부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의도되었다는 의혹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들도 일부 존재하며,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아래 [표-2]참고).

[표-36] 구 삼성물산의 의도적 실적 부진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삼성” 차원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의도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의혹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들도 일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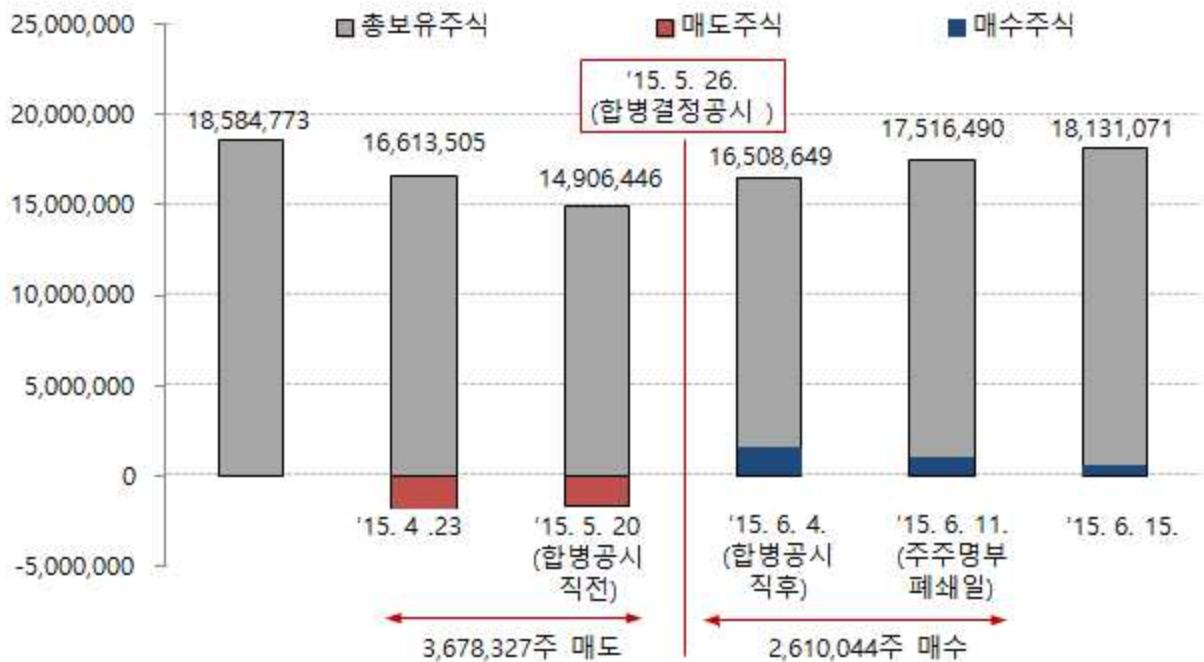
“여기에 이 사건 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구 삼성물산(주) 주가가 낮게 형성될수록 이건희 등의 이익이 커지고, 이건희 등이 구 삼성물산(주)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에 의한 기업집단 내 회사의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상 지배는 그 성질상 구체적인 지배력 행사 과정 등에 대한 뚜렷한 흔적이 남기 어렵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자료 : 서울고등법원 2016라20178, 20190 (병합)결정문, 참여연대 등 청원서 p.29에서 재인용.

○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태

- (구)삼성물산의 의도적 주가하락 의혹은 단순히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이러한 의도적 주가하락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이는 합병 전후 국민연금의 비정상적인 투자행태를 근거로 함.
-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10월 제일모직 상장 전 13.7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4~5월 2개월 간 약 368만주를 매도하는 등 지속적인 매도를 통해 합병 전 마지막 거래일에는 국민연금 지분율이 9.54%로 6개월 사이 4.21%를(6,573,913주) 매도했음. 그리고 합병 결의 이후에는 다시 약 260만주를 다시 매입해 보유비중을 11.61%까지 늘렸음. 즉, 합병공시 이전까지 보유주식의 대량매도를 통해 주가 가치를 낮췄다가⁵¹⁾,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후 다시 (구)삼성물산의 주식이 상승하자 다시 이를 매수한 것임.

[그림-36] 합병공시 전후의 국민연금 삼성물산 보유주식 변화(단위 : 주)



* 자료 :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국민연금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경제개혁연대(2015)를 토대로 재정리.

- 만약 합병이 성사될 것을 가정했다면, 합병 발표 이후 오히려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하고,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국민연금은 오히려 반대로 투자한 것임⁵²⁾. 합병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6월 10일 종가기준 삼성물산은 75,000원) 낮은 합병비율에 따라(합병가액 55,767원) 그만큼 손해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합병에 찬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의사결정을 한 것임.

4)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대상과 결정과정은 아래 [표-3]과 같음.
- 삼성물산 합병 건은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에 해당되며,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해야 함. 다만, 핵심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인지, 투자위원회의 월권인지 판단할 수 있음.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시나리오는 이미 제일모직 상장 직후인 2014년 12월부터 증권업계나 언론 등에서 유력하게 제기돼오던 이슈였고,⁵³⁾ “한국에서 자본시장이 만들어진 이래 가

51)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의 2개월 간 지속적인 매도가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음. 제윤경 의원실 보도자료(2016.11.15).

52)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연금행동 등은 2016년 6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 배임)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고발함.

53) 매일경제, “내달 제일모직 상장..삼성지배구조개편 시나리오 본격가동”(2014. 11.25). 연합뉴스, “제일모

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벤트”(강정민·이은정, 2015)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사안이었음. 특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합병 여부, 더 나아가 삼성 재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음.

[표-37]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제40조(의결권 행사 대상 및 의사결정) ① 기금은 기금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한다.

1.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미만이고, 주식 보유비중이 1,000분의 5 미만인 종목. 이 경우 본부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 본부장 또는 행사담당부서장이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이에 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보유주식 의결권행사지침 제3장 행사방법>

제8조(의사결정의 주체 등) ①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3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 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결권 행사시 외부 의결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015. 6.9, 이하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 가입자 위원은 국민연금이 대량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반대해야한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최소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요구함.

[표-38] 2015년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6.9) 회의록 중 삼성물산 합병 관련 가입자대표 발언

김경자 위원 : 기금운용위원회 역할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이 기금을 잘 운용해야 하는 것들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 관련한 주식을 보면 사실 최소 한 2~30%는 더 상향해서 사실은 합병이 돼도 돼야한다고 저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야기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 과대평가 되고 다음에 과소평가는 ○○ 바로 그 시점에서 사실은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 관련해서 저희는 상당히 저희 국민들의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합병 관련해서는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기사화된 것을 보면 관련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사실은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럴 것인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깊은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관련한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직, 다음은 삼성물산과 합병?..가능성 술술”(2015. 1. 6). 경향,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설 모락모락”(2015. 1. 6).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승계 시나리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2015. 1. 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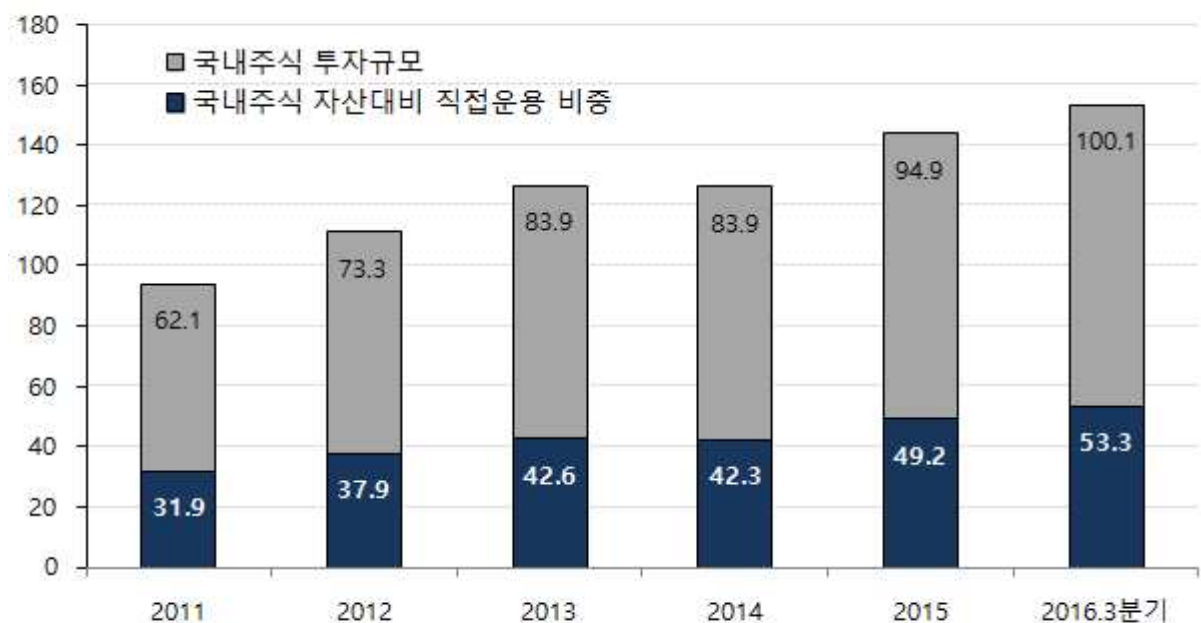
- 삼성물산 합병 이전인 2015년 6월 SK와 SK C&C 합병(2015년 6월 26일)에서의 의결권 판단은 투자위원회가 아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다뤄졌음. 기금운용본부는 “SK주식회사와 SK C&C간의 합병비율에 관하여는 적법절차를 거쳤으나 최대주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비율이 정해졌다는 논란이 있어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부의”했으며,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가치 훼손’(34조)을 근거로 합병에 반대 표결했음⁵⁴⁾.
- 즉,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SK와 SK C&C 합병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에게는 유리하고 국민연금에게는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정해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전문가기관들 또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견과 함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것은 SK와 SK C&C 합병 전례를 보더라도 일관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의사결정이었음.
- 또한 투자위원회 표결 일주일 전에 투자위원으로 들어가는 대체투자실장이 인사 교체된 문제(한겨레 2015. 11.20) 역시 의혹을 더하고 있음.

3.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및 의결권 행사 현황

○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규모 100조원 돌파.

-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16년 9월 말 기준 국내주식에 18.4%, 국내채권 52.5%(286.1조), 국내대체 4.0%(21.8조), 해외주식 13.7%(74.4조), 해외채권 4.1%(22.3조), 해외대체 6.3%(34.6조)에 투자해 운용하고 있음.

[그림-37]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2016년 12월 13일 방문).

54) 뉴스원(2016. 11. 28) 기사 및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 조회 참고.

- 이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해 100.1조원을 넘어섰으며(2015년 말 기준 94.9조억원), 전체 자산에서 국내주식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임. 이 가운데, 국내주식 자산대비 직접 운용하는 비중 역시 53.3%에 이르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투자의 절반이 10대 재벌대기업에 투자. 이중 삼성이 최고(22.9%)

-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 가운데 국내 10대 대기업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말 기준으로 48조 1,835억 원(보통주, 5% 이상 보유기준)으로, 전체 국내주식투자 비중의 절반 수준인 50.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삼성은 10대 대기업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국민연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삼성 내 9개 상장계열사에 투자되는 국민연금기금은 21조 5,790억으로 전체 국내주식투자 비중의 22.9%를 차지하고 있음.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 8.5%(7조 9,427억), LG 7.5%(6조 9,801억), SK 7%(6조 4,398억), 롯데 1.6%(2조 6,679억) 등의 순임([표-5]참고).

[표-39] 10대 그룹 상장사 국민연금 지분 현황(단위 : 억원, %, 보통주, 2015년 말 기준)

구분	계열사	평가액 (억 원)	자산군내 비중	지분율	구분	계열사	평가액 (억 원)	자산군내 비중	지분율	
삼성	삼성전자	164,966	17.6	8.9	SK	SK	14,406	1.6	8.6	
	호텔신라	4,039	0.4	13.4		SK하이닉스	18,407	2	8.2	
	삼성증권	2,802	0.3	8.8		SK네트웍	760	0.1	5.6	
	삼성SDI	6,934	0.7	8.8		SKC	1,626	0.2	13.1	
	삼성전기	4,065	0.4	8.7		SK케미칼	2,108	0.2	11.9	
	삼성화재	12,346	1.3	8.5		SK이노베이션	11,577	1.2	9.6	
	삼성물산	15,349	1.6	5.8		SK가스	590	0.1	9.1	
	제일기획	2,698	0.3	11.3		SK텔레콤	14,924	1.6	8.6	
	에스원	2,591	0.3	6.8		롯데	롯데푸드	1,739	0.2	13.4
현대 자동차	현대차	24,384	2.6	7.7	롯데칠성		3,387	0.4	12.3	
	기아차	15,973	1.7	7.5	롯데하이마트		1,545	0.2	11	
	현대제철	4,165	0.5	6.3	롯데케미칼		5,935	0.6	7.1	
	현대모비스	18,844	2	7.8	롯데제과		1,727	0.2	5.5	
	현대글로비스	9,817	1	13.5	롯데정밀화학 (구 삼성정밀)		12,346	0.1	5.3	
	현대위아	3,654	0.4	12	GS		GS	4,116	0.4	8.7
	현대건설	2,590	0.3	8.1			GS리테일	2,872	0.3	6.8
LG	LG	8,441	0.9	6.9	현대 중공업		현대미포조선	561	0.1	5.4
	LG전자	6,239	0.7	7		현대중공업	3,554	0.4	5.3	
	LG화학	21,716	2.3	10	한진	한진	389	0	7	
	LG유플러스	3,415	0.4	7.5		한진칼	1258	0.1	12.2	
	LG하우시스	1,926	0.2	14.7		한국공항	46	0	5	
	LG생활건강	14,648	1.6	8.9	한화	한화	3,317	0.4	11.2	
	LG생활과학	1,225	0.1	12.2		한화테크윈	2,499	0.3	13.1	
	LG상사	1,766	0.2	13.5		한화케미칼	5,344	0.6	12	
	LG디스플레이	7,365	0.8	8.4	두산	두산중공업	1,784	0.2	8.1	
	LG이노텍	2,963	0.3	12.7		10대 그룹 평가액 소계				
	지투알	97	0	6.7	481,835					

* 계열사는 금융공시자료 2015년 사업보고서를 참고했으며, 지분현황은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주식 투자종목 내역을 근거로 정리한 것임(지분율 5% 보유이상이며, 우선주는 제외하고 보통주 기준).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개.

-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015년 말 기준 290개 기업임. 그 중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곳은 삼성전자로, 전체 국내주식 투자의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가액으로는 약 16조 4,966억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음.
-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2조 4,384억), 네이버(2조 4,178억), 한국전력(2조 2,873억), LG화학(2조 1,716억), 아모레퍼시픽(2조 695억), 현대모비스(1조 8,844억) 등의 순임.

[표-40]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상위 10 투자종목(단위 : 억원, %, 2015년 말 기준)

순위	구분	평가액(억원)	비중(%)	지분율(%)
1	삼성전자	164,966	17.6	8.9
2	현대차	24,384	2.6	7.4
3	NAVER	24,178	2.6	11.1
4	한국전력	22,873	2.4	7.1
5	LG화학	21,716	2.3	10.0
6	아모레퍼시픽	20,695	2.2	8.5
7	현대모비스	18,844	2.0	7.8
8	SK하이닉스	18,407	2.0	8.2
9	신한지주	17,322	1.9	9.3
10	기아차	15,973	1.7	7.5

* 자료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2016년 12월 13일 방문).

○ 2015년 국민연금 2,836건 의결권 행사. 반대율은 14.78%.

-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⁵⁵⁾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한국기업지배구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2,836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반대율⁵⁶⁾은 14.78%였음. 89개 기관투자자 가운데 ‘트리스톤자산운용’이 16.15%로 가장 반대율이 높고, 그 다음이 국민연금이 두 번째로 높음. 다른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3.14%, 사학연금공단은 1.79%임.
- 2016년은 11월까지 658회의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재무제표(이익배당)보고가 33.33%로 반대율이 가장 높았고, 감사선임 31.58%, 기타 비상무이사 26.32%, 사내이사선임 24.04%, 사외이사선임 22.34% 등임.

55) 보유지분율이 1%미만이고, 보유비중이 주식전체 대비 0.5%미만인 경우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56) 반대율은 정기주총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대한 반대한 비율을 의미함(주주안건 제외, 묶인 인간의 경우 개별적으로 간주).

[표-41]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연도별 및 안건별 반대율 (단위 : %)

안건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1.
재무제표(이익배당)승인	1.97	0.6	1.24	1.8	1.93	1.67
재무제표(이익배당)보고	0	0	16.67	20	0	33.33
정관변경안건	6.08	78.08	30.06	7.78	20.59	17.24
사내이사선임	16.67	20	28.81	23.06	21.98	24.04
사외이사선임	18.33	24.6	30.39	28.87	27.67	22.34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	29.63	23.68	43.64	24.44	21.67	26.32
감사위원선임	12.56	16.79	16.42	17.15	16.88	16.78
감사선임	32.69	33.33	33.33	40.32	43.75	31.58
이사보수한도	1.35	1.84	0.3	0.58	0.79	2.39
감사보수한도	1.35	0	0.65	0.63	0	0.61
주식매수선택권	6.67	0	6.25	0	0	0
임원퇴직금지규정	0	10.34	6.67	8.82	14.29	6.67
회사 또는 사업의 양수 및 양도	0	0	0	0	0	0
회장 또는 대표이사 선임	0	0	0	0	0	0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를 재정리.

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 그동안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가 주요 정책으로 부상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활용과 역할이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제기되기도 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개선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지기도 했음.
-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과정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오히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동원될 정도로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임.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청와대-최순실-삼성’ 간 불법커넥션에 대가성으로 동원된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검사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임. 또한 이번 논란을 교훈삼아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벗어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충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1) 국민연금 의결권 의사결정 지배구조개선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이나 기금운용 시행규칙에서(앞의 [표-3]), 의결권행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수행하되,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지 여부가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만 판단하도록 돼 있고,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으로, 대리인인 기금운용본부에 위임된 권한은 가입자의 권리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가입자가 의결권에 대한 직접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국민연금기금 특성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체계임.

(1)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개별투자기업 의결권행사 권한부여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전문위원회로 정부,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 대표 추천 (각 2인)과 연구기관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됨.
- 현재는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안전을 부의할 경우에만 개별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데, 9명 중 3명의 전문위원 이상이 요구하면 투자위원회가 해당 안전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보장하는 등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권한에 대한 일정정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작년 10월 27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방치하고 있음.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 변경 : 정부 영향력 최소화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개별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영향력을 최소화해 독립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로 구성·운영 중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위원 선임의 추천권한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총 9인의 위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정부 추천 위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가입자 추천 2인과 연구기관 추천 1인 등 총 4인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여야 각 2인) 추천으로 전환하도록 함(또는 정부 위원 및 연구기관 2인에 대해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
- 지역가입자대표 추천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영자대표가 공적인 것을 보더라도 대표성을 지닌 단체를 찾기 어려우며(실무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 오히려 수협과 농협이 농·어업인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임⁵⁷⁾. 또한 연구기관 추천 역시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민간연구기관은 추천권한을 갖는 근거가 취약함.

[표-42]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추천권한 변경

현행		개선	비고
근로자 대표 추천 2인	→ 현행 유지	근로자 대표 추천 2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 1인
사용자 대표 추천 2인		사용자 대표 추천 2인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각 1인
정부 추천 2인	→ 1인 축소	정부추천(1인)	보건복지부 추천 1인
지역 가입자대표 추천 2인	→ 추천 전환	국회 추천(4인) 또는	여야 각 2인 공익위원 추천
연구기관 추천 1인		지역가입자(2) + 국회추천(2인)	여야 각 1인 공익위원 추천

57) 이는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지닌 문제와 맞물리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위원구성을 진정한 가입자대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

(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행위준칙 강화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행위준칙을 강화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현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는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거래기관에서 현직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먼저 황인태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01%(1,126,393주)인 ‘서연’그룹의 사외이사이자, 국내 주식 및 채권 거래사인 동부증권의 사외이사이기도 함. 정부가 추천한 신현한 위원(연세대 교수) 또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약 10%인 LG이노텍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본인 역시 1천주를 보유하고 있음.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조영길 위원(INS법무법인 변호사) 역시 국민연금이 18,237주를 보유하고 있는 KSS해운 사외이사임.
- 의결권행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까지 판단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이 투자하거나 관계되는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표-4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사외이사 참여 현황

성명	소속·직위	사외이사(임기)	국민연금 관련	비고
김재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투자신탁운용(주) (2011.5.26.~2015)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015. 3.25~2016.3.25.)	국내주식, 채권,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정부추천
신현한	연세대학교 교수	엘지이노텍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14.3.14.~2017.3.14.) 보수 : 4천4백.	국민연금 지분율9.94% (2,352,012주). 본인 1,000주 보유	
조영길	INS법무법인 변호사	KSS해운 사외이사 (2011.3.18.~2017. 3.28) 보수 : 6천 733만	국민연금 18,237주 보유.	사용자 대표 추천
황인태 (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동부증권 사외이사 2014.03.14~ 2017.03.25. 보수 : 9천 4백.	국내주식, 채권거래증권사 국내채권 직접거래운용기관 국내 단기자금 거래기관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서연 사외이사 2015.03.27.~2017. 03.26 보수 : 2천만.	국민연금 5.01%(1,126,393) 보유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최근 사업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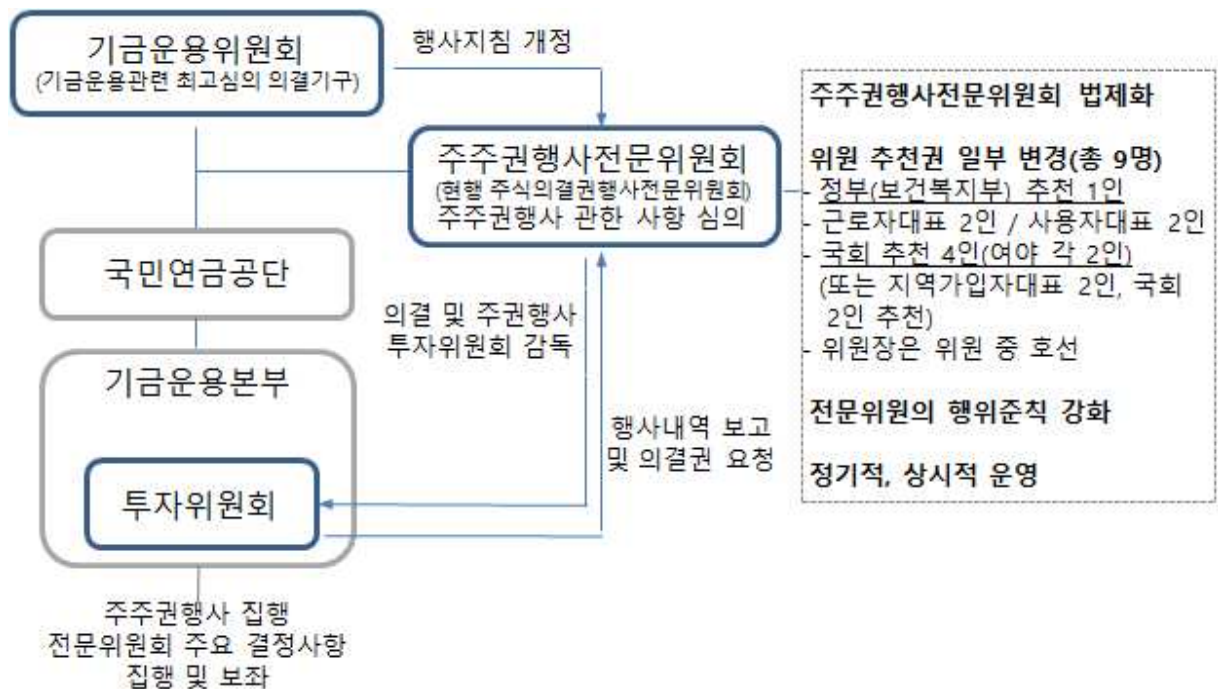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용지침’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위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련된 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지님. 따라서 위원 선임 시, ▷영리가 동반한 겸직 금지 ▷이해상충 행위금지 ▷직무관련 다양한 수혜 금지 ▷전관예우 금지 ▷주식 등 개인투자 제한 등 기금운용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행위준칙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⁵⁸⁾.

(4) 공개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보장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임원(회장이나 대표이사, 이사 등) 선임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찬반 등 민감한 사안을 결정하며, 그만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함.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큰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지배구조나 주식 및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권까지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투자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행사 내역과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시·공시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안건 발의권, 자료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함.

[그림-38]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의사결정구조 개편체계



58) 이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가운데 일부 역시 에스에프에이(국민연금 5.73% 보유, 1,028,207주),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최대 주주 9.25%), 현대미포조선(5.35%, 1,069,743주)을 포함해 신도리코, 나이스정보통신, 하나자산신탁 등에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음.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1) 의결권의 강화, 그리고 주주권으로의 확대

- 일반적으로 주주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전횡이나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견제,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법률적 의미의 주주권은 의결권(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보유주식에 비례에 갖는 일종의 투표권),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이 있음. 더 나아가 주주권을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대한 감시와 제안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대리인 위험을 낮추는 모든 활동으로 이해하면, 캐나다 연기금인 CalPERS의 Focus List⁵⁹⁾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관여(engagement), 지배구조펀드의 육성 및 투자, 투자자 연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 입법운동 등을 포함함(김순호, 2013).
-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 소극적 주주권의 의미인 의결권 행사에 국한돼 있는데,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활용의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원종현). 이에 따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확대하고, 의결권행사지침 역시 주주권행사지침으로 변경해 개정될 필요가 있음.

[표-44] 세계 주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비교

구분		CalPERS (미국)	CPPIB (캐나다)	GPIF (일본)	SuperAnnuation (호주)	국민연금 (한국)
자국 주식시장 내 비중		약 0.3%	약 0.1%	약 5%	약 20%	약 6.4%
연금수혜자		캘리포니아 공무원	미국 내 사립대 임직원	전 국민	전 국민	전 국민
소극적 주주권	의결권 행사	○	○	○	○	○
	비통일적 행사	×	×	○	○	△
능동적 주주권	주주관여	○	○	×	펀드매니저에 따라 상이	×
	중점감시목록	○	×	×		×
	주주제안	○	○	×		×
	사외이사추천	×	○	×		×
	투자자연대	○	○	×		×
	주주소송	○	○	×		×
	입법소송	○	○	×		×

* 자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한국경제연구원 등.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에서 재인용.

(2)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 공공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수익과 안정성,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자임. 이미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철학이자 정책방향으로, UN에서도

59) 기업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을 선정하여 관여(engagement)와 개입 정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전략임(김순호, 2013).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al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있음.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도 윤리,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투자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⁶⁰⁾.

- 사회책임투자 분석의 요소인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경(작업환경, 안전, 공해물질배출, 환경사고 가능성, 지구환경 및 지역환경 기여), 사회는 노동(고용, 노사관계, 교육훈련, 고용평등), 인권(차별철폐, 아동노동, 강제노동, 고충처리, 토착주민관리), 지역사회(부패방지, 정치적 기여,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 기업지배구조(기업투명성,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7월 1일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였고,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제4조의2 책임투자)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관련 내용이 국민연금법 개정(제6장 7조 4항)을 통해 신설됐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7조 책임투자).
- 그러나 책임투자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상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의 경우 세부적인 행사범위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이 행사지침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책임투자 자체가 아래 [표-12]에서 보듯이,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반영해 위탁·운용하고 있을 뿐임.⁶¹⁾

[표-45]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평가지표

사회책임투자 요소	이슈	평가 지표
환경	기후변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청정생산	청정생산 관리시스템, 용수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배출량
	친환경제품 개발	친환경제품 개발활동, 친환경 특허, 친환경 제품 인증, 제품환경성 개선
사회 (노동)	인적자원관리	1인당 급여, 1인당 복리후생비, 조직 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산업안전	보건안전 시스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외부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하도급 거래	거래대상 선정 프로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협력업체 지원활동, 하도급법 위반사례
기업 지배구조	공정경쟁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공정거래 저해행위, 정보보호시스템 인증, 매출액 대비 기부금
	주주의 권리	경영권 보호 장치, 주주의견 수렴 장치, 주주총회 공시시기
	이사회구성과 활동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이사회 구조의 독립성, 이사회의 활동, 이사보수정책
	감사제도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장기재직 감사 또는 감사위원 비중, 감사용역 비용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
	관계사 위험	순자산 대비 관계사 우발채무 비중, 관계사 매출 거래 비중, 관계사 매입 거래 비중
	배당	주주가치 환원율, 최근 3년 내 배당 지급 여부, 과소 배당

* 자료: 기금운용본부에서 재정리. 현재 ESG평가결과와 ESG요소를 고려한 운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책임투자 가상펀드운용(‘14.8월 출범)에만 활용되고 있음.

60) 주요국가의 연기금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순원(2012)를 참고하길 바람.

61)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반영한 자산군의 투자비중은 약 6조 8,838억 원이며, 직접투자는 없고 위탁운용사를 지정해 SRI펀드 형태로 투자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 그리고 재무적 성과만이 아닌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고려 등 공적기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함.
- 국민연금의 관련 법 규정 등이 ‘사회’를 삭제하고 ‘책임투자’로만 규정하면서, 사회책임투자를 ‘다른 방식의 투자기법’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익률만이 아니라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공공성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연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실질적 수혜와도 연관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⁶²⁾.
- 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주주권 행사까지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더욱 강화해나가야 함.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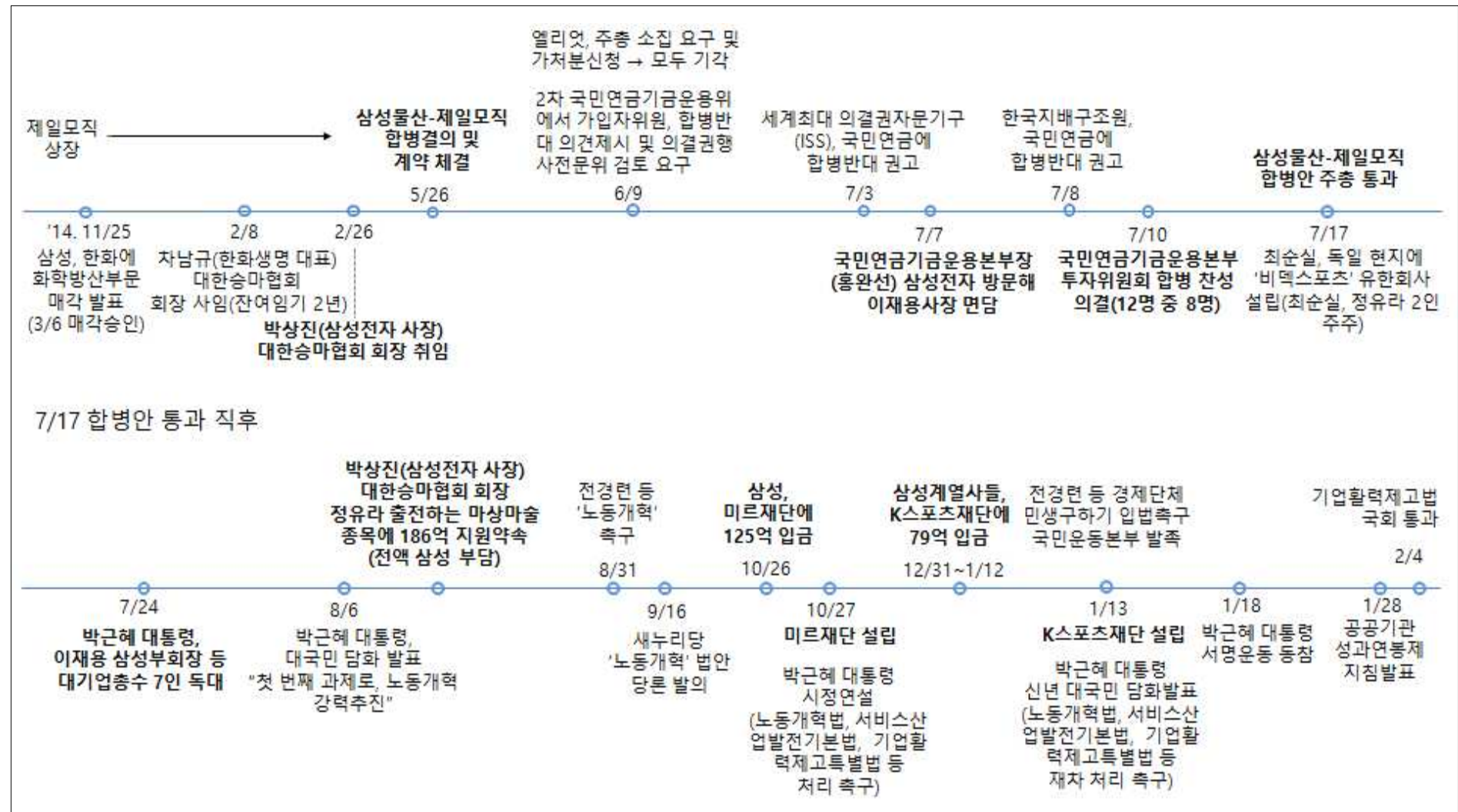
5. 마치며

- 정권과 재벌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과정에 국민연금이 대가성으로 합병에 찬성했는지 여부는 검찰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임.
- 그러나 정치적 개입여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념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이 소수 전문가들의 재무적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임. 국민연금의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기금운용본부의 해명처럼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면 과연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곧 의사결정구조 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의 역할과 기준의 문제이기도 하며, 나아가 공공성을 무시한 수익률 중심의 기금운용 방식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함.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의결권 행사의 의사결정구조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용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의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음. 이것이 크게 훼손된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임.

62) 우선적으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국민연금기금 핵심적인 투자 원칙으로 고려해야함. 예컨대 지난 옥시사 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이고, 환경건전성을 위배하는 기업이나, 확산탄처럼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기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등 사회책임을 고려한 ‘사회적 선별투자’(social screening)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할 필요가 있음.

63) 예컨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준수여부,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파견 여부, 작업장 안전이나 산업재해, 인위적 구조조정 그리고 횡령·배임 및 불법탈세 등 비위 임원선임 문제, 기업의 정치자금, 각종 불공정거래나 부당내부거래 및 부당행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포함될 수 있음.

[부록-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을 둘러싼 주요 상황과 경과



[부록-2] <박근혜-최순실-삼성>의 불법 커넥션과 국민연금 동원 의혹에 대한 관계도 (언론보도를 토대로 구성)



참고자료

- 경제개혁연대. 2016.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문제없다는 국민연금의 해명을 끝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보도자료, 2016. 11. 24.
- _____. 2015.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문제점”, 경제개혁이슈, 2015-7호.
- 공정거래위원회. 2016. 기업집단 정보포털, 2016. 11. 30일 기준.
- 국민연금공단. 2016.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2015. 7. 30. 개정 기준.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2015. “2015년 39차 투자위원회 회의록”, 기금운용본부 전략기획실, 2015. 7. 10.
- _____. 2015.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보고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 2015. 7. 10.
- 김승호. 2013.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 : 주주권행사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 2013-07.
- 보건복지부. 2014.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2014. 2.
- _____. 2016.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서”, 2016. 4. 8.
- 삼성 제일모직. 2015. “IR Presentation”, 2015. 6.
- 원종현. 2011. “기업지배구조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35호. 2011. 5. 13.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4.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주요 이슈 및 과제”, 주간 금융경제동향, 2014-18.
- 제윤경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2016. “삼성물산 합병 관련 국민연금 의혹, 검찰 철저히 조사해야”, 2016. 11. 15.
- 참여연대, 연금행동 등. 2016.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청원서”, 2016. 12. 1.

<참고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http://fund.nps.or.kr>)

한국기업지배구조원(<http://vip.cgs.or.kr>)

○ 2016.2.25.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포스터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일 시 : 2016년 2월 25일(목) 14:00~16: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김연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14:10 ~
 - 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15:00 ~
 - 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2)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3)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4) 정승일 (경제학 박사)
 - 5) 이창곤 (한겨레 신문 기자)
 - 6) 정재욱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 종합토론 15:40~16:00



공동주최 : PPA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2016.8.10~11. 공적연금 대토론회 포스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일시 및 장소

1일차 | 2016년 8월 10일(수) 13시~17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일차 | 2016년 8월 11일(목) 13시30분~18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일차 8/10(수) 13:00 - 17:00 /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제 1.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전창환 한신대 교수

토론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보건복지부

주제 2.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발제 | 이찬진 변호사

토론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2일차 8/11(목) 13:30 - 18:00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사회 | 김연명 중앙대 교수

주제 3.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발제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김광수 국회의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
김성욱 건양대 교수, 보건복지부

주제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발제 |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토론 | 남인순 국회의원, 남찬섭 동아대 교수,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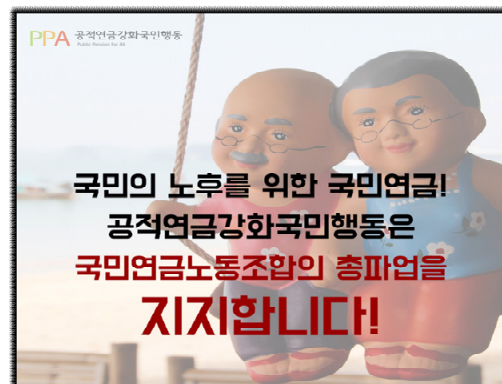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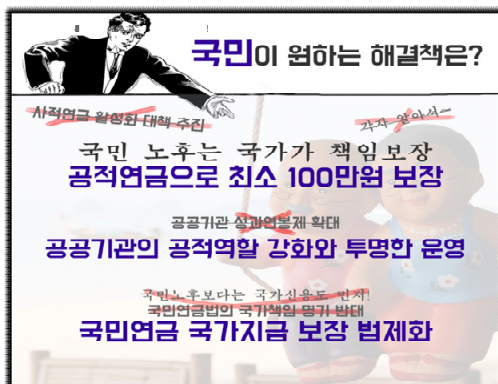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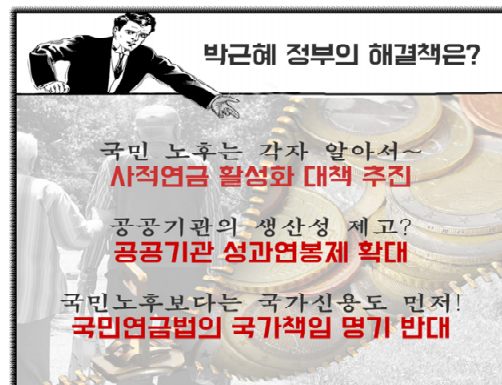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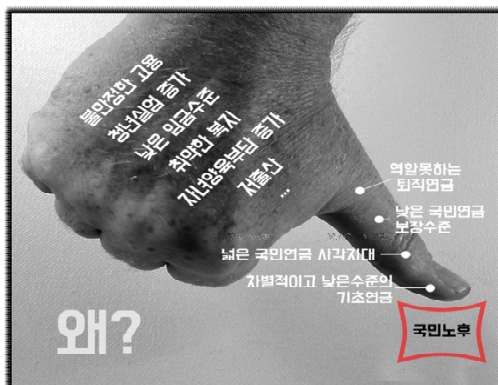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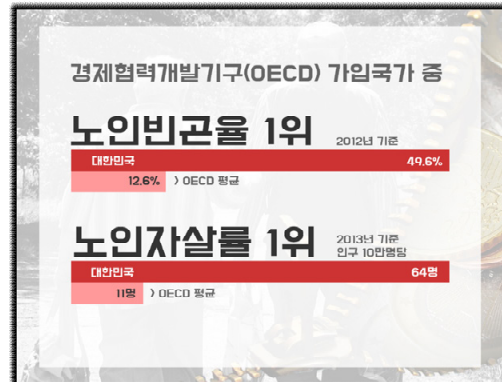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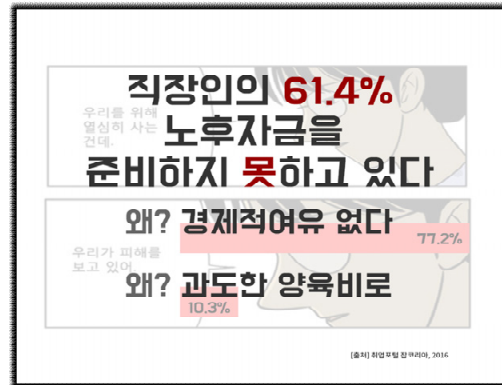
종합토론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위원

국회의원 |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해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 2016년 국민연금지부 총파업투쟁 지지 카드뉴스



○ 2016.11.25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토론회 포스터

The poster features a dark blue background with a large, stylized black umbrella icon on the left side. The main title is written in large, bold, white Korean text. Below the title, the date and time are in yellow, and the venue is in white. A pair of black-rimmed glasses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date. The bottom section contains a list of speakers and hosts, each preceded by a small black box with white text.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n illustration of a group of stylized human figures, some with canes, standing under a black umbrella with raindrops falling around them.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

2016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사회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덕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 2016.12.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손피켓



**국민연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운 자들에게 책임을!**

**이럴려고 냈나
국민연금**

**국민연금-삼성-최순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12.12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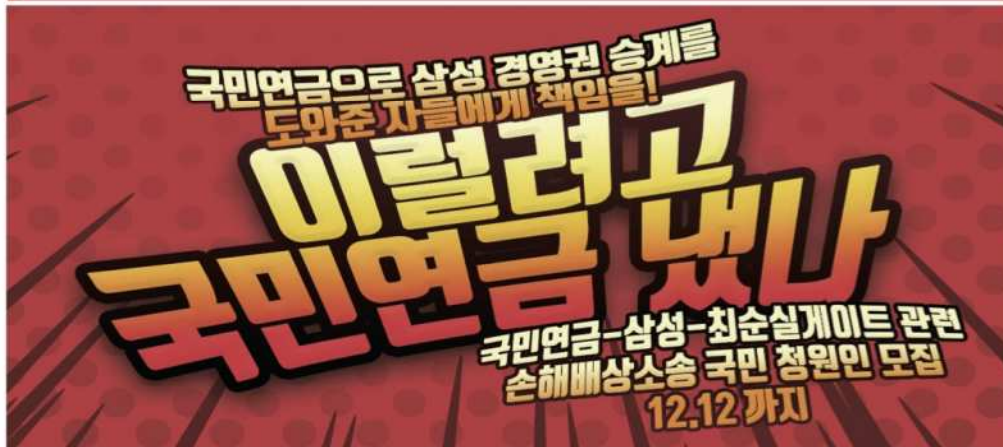
박근혜, 안종범,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진행주최: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청원처: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온라인참여: <http://www.pensionforall.kr> 또는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66444>

아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통해 공적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의 오너로 제일모직의 주식만을 보유한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대주주에 오름
문형표, 홍완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당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 관리, 운용책임자, 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 수익 증대의 책임이 있던 자
박근혜, 안종범,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전자에 청탁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 최순실 일가 등에 약300억원을 입금토록했고, 안종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결정 결정 과정을 직접 지휘, 문형표, 홍완선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협력

○ 2016.12.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전단지(앞면)

**박근혜.안종범.최순실.이재용.문형표.홍완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_2016.12.1.~12 <오프라인모집_평일 11:30~13:00 청계광장>
- 청원처_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장관
- 온라인참여_ <http://www.pensionforall.kr> _연금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66444> _참여연대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범.최순실

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통해 공적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했습니다.

- **이재용** _ 삼성의 오너로 제일모직의 주식만을 보유한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대주주에 오름
- **문형표.홍완선** _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당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책임자, 홍완선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 및 수익 증대의 책임이 있던 자
- **박근혜.안종범.최순실** _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전자에 청탁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 최순실 일가 등에 약300억원을 입금토록했고, 안종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결정 과정을 직접 지휘, 문형표.홍완선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삼성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협력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참여연대

○ 2016.12.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전단지(뒷면)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 국민연금, 재벌과 정권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한눈에 보는 박근혜.안종범.최순실.문형표.홍완선.이재용, 비리커넥션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참여연대

○ 2016.12.19.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개선 토론회 포스터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2월 19일(월)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 회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 제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
	이찬진 (변호사 /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김승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양윤석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이학영
문의 권미혁 의원실 (02-784-7727)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016년 활동보고서

집행위원장 | 정용건

주소 |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01호

전화 | 070-4211-6578

팩스 | 02-423-6578

이메일 | pension1045@gmail.com

홈페이지 | www.pensionforall.kr

국민의 노후는 국가책임으로, 공적연금으로

2016년 연금행동 활동보고서



이 인쇄물은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한 친환경 인쇄물입니다.